

제41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7월 31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8)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업무보고
 - 법무부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군사법원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8) 26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26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26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6
- 업무보고 39
 - 법무부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군사법원 소관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49
- 업무보고 54
 - 법무부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군사법원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회부 법안을 심사하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 계획서 등을 채택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관련 자료는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1.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및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속심사 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고 지난번 검토보고를 한 바 있어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이정식 고용부장관님 출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 이 안건에 관련된 겁니까?

○송석준 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원 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원 구성이 어렵게 돼서 법사위가 위원님도 확정이 되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법사위 소관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기타 타 부처 소관 상임위 법안도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아침에, 어제 유상범 간사님께서 이 의사일정을 보시고 뒤로 밀려 있는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사법원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사일정을 자연스럽게 해 가자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법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시고 원칙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유상범 간사님의 합리적인 제안을 왜 안 받아들이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1번부터 7번 안까지 돼 있고 7번 안건이, 오늘 아주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법사위가 뭐 하는 데인지 또 오늘 법사위에 처음 참석하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우리가 법사위에 왔는데 당연히 법사위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동안 밀린 타 부처 법안도 다루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장님, 타 부처 소관 법률안은 어차피 오늘 다루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7번 안건을 1번 안건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아마 계속,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법안 이미 지난번에 토론을 했으니까 이번에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분명히 계속 국회법 108조를 말씀하세요.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근거해서 1명 이상이 발언을 했으면 이제는 표결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국회법 60조를 보세요. 국회법 60조는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에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요. 다만 여야 간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발언을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회의는 300명 다 발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의원 수를 제한하지만 상임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의 발언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을 해서 종결하면 안 되고요 위원들의 모든 발언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검토보고를 생략한다고 그랬지 토론을 생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토론하자고 했더니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사실과 다른 의사진행발언 내용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사위에서는 법안 의결부터 먼저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타 상위 법안을 할 경우 저렇게 행안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석합니다. 만약에 업무보고를 먼저 한다면 그리고 협안질의를 한다면 저 장관님들은 그 업무보고 질의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 업무를 보기 가 어렵습니다.

특히 타 상위 법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석하시기 때문에 저분들을 빨리 일터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타 상위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타 상위 법안 2개를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은,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시켜서 관철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로써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의결로써 끊습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한다면 이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토론을 중지시킬 수 없다면 법사위는 항상 자정쯤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회법 49조 1항이나 52조 2호에 따라서 위원장의 재량으로 항상 위원회 의결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승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의 취지는 간사 간 협의권을 무시하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상범 간사님과 이 의안 상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진행발언은 유용하지 않다,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회법에 보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의 요지를 위원장님께 미리 통지를 해서 ‘어떤 내용의 의사진행입니다’라고 미리 알려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보다는 법안 내용에 충실히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제가 송석준 위원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냐 사전에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법에 보면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회의 날짜를 정한다, 안건을 상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하는 것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데, 협의가 아닙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의사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고요.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건 상정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국회법 조항을 제가 해설을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전현희 위원**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에 정권의 탄압을 받고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에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에 관여한 불법행위를 한 감사원과 권익위의 고위 간부 16명을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공수처에서 저를 허위무고성 제보를 한 권익위 전 기조실장을 소환조사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현재 감사원 고위 간부들이 순차적으로 공수처에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그리고 현직 고위공무원 등이 동원된 정치적 탄압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독립성을 망각한 감사원이 정권의 입맞에 맞는 돌격대로 전락한 그런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와서 이번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감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소위 감사원의 비위로 일컬어지는 그리고 사무총장도 인정을 한 앉은뱅이 감사……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의사진행발언 아닌 것 중단 안 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전현희 위원** 현지 실지감사에 있어서 밀행성이 요구되는 감사비용을 사실상 횡령한다는 이런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중단시키시지요, 이 정도면.

위원장님!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 내용이 아닙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현지 실지감사 예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

○**위원장 정청래** 전현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유상범 간사님의 어필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할 내용을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따라서 이러이러하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라는 것을 다 빌려서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면 거기에 관한 것을 분량이나 내용이나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유상범 간사님의 이 항의는 저는 나름대로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도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자료제출 요구를 얘기 안 했어요.

○**전현희 위원** 그래서 실지감사 예비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 요구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용에 관한 자료 요구를 저희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모두 자료를 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감사원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의 법사위 의결을 무시한 이런 자료 요구 거부에 대해서 좀 따끔한 경고를 해 주시고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증인을 불러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실 증인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마이크 잠깐 켜 주세요.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감사원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 감사원의 현지 실지감사 집행내역, 비용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고, 제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감사 관련 회의나 기타 사용을 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용에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장 정청래** 그건 대통령실 거지요?

○**전현희 위원** 예, 다 대통령실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직원들은 다 들으셨으니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정철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상임위에서 대체토론,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송석준 위원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각 교섭단체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적 주장을 하는 거라고 폄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운영의 기본 규정은 제60조 1항의 의제에 관련돼서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무슨 필리버스터처럼 끝없이 상임위 발언을 제한하지 않고 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제에 관련돼서 제한할 때 상임위에서도 ‘7분 발언할 것이다, 5분 발언할 것이다’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준용규정을 원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108조 2항을 적용해서 한 번만 말하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60조 1항의 규정과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두 조항이 충돌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가지고, 한 명만 발언이 있어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103조 규정에 보면 본회의에서도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 단서조항은 뭐냐 하면 한 번만 발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게 제103조의 단서조항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체의 법률 취지를 제60조 1항 그다음에 제103조, 제108조 1항 전체 취지를 다 감안한다면 최소한 두 번 정도의 발언 기회는 주는 것이 결국은 상임위에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법률 해석이 아니라 상임위의 의제에 관해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의 합리적 해석이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그냥 무슨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려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말씀하신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건 좀 적절치 않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철래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이 그래도 합리적이시네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두 번 정도는 토론을 보장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한다고 했고, 사실은요 지난번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처 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토론 기회를 다시 보장하기 위해서 ‘토론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토론하시지요’ 이렇게 한 것은 장관님들이 그때는 안 나오셨는데 지금은 나오셨기 때문에 장관

배석하에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국회법 제71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용규정입니다. 본회의장과 위원회가 같다는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와 재청 이런 걸로 표결은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 제71조에 나와 있고요.

○**유상범 위원** 제청으로는 안 됩니다. 동의로만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동의자가 있고 거기에 또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항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여기서 의장은 위원장을 뜻합니다. 준용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 2항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여기서 의장은 또 위원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 동의를 할 수 없다’. 있고요.

3항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법 조항에 어긋나게 진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미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앞으로 나올 텐데 그때 한 번 더 보시고요.

또 권한쟁의심판의 A안이 나오든 B안이 나오든 그것은 저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서 그 판결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해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30초만 제가 반론할 수 있는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장경태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30초만 주세요.

○**장경태 위원** 지난 감사원 사무총장 출석 과정에서 제가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방통위 또는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감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고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엄중하게 꾸짖어 달라니까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꼼수로 제출하거나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장경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고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냐하면 지금 해석을 이상하게 하셔 갖고……

○ 위원장 정청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 위원장 정청래 토론 없습니까?

○ 조배숙 위원 30초만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준용규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장에 따르고 이 장에 없는 것을 준용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토론 없습니까?

○ 김용민 위원 토론으로 하세요, 토론으로.

○ 김승원 위원 나중에 하세요.

○ 위원장 정청래 광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제71조(준용규정)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장에 있는 규정은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자, 토론해 주세요.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상범 위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토론자들.

○ 송석준 위원 이렇게 멋대로 해석해 갖고 어떻게 위원장 자격이 있어요?

○ 위원장 정청래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광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이것, 71조 조항 임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과행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면 법원에서…… 여기가 뭐 법원도 아니고 재판할 것은 아니잖아요.

○ 송석준 위원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대로 무시하고……

○ 장경태 위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넘어가시지요.

○ 송석준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것 읽어 보세요, 71조.

○ 김승원 위원 법의 해석 문제는 나중에 하세요.

○ 장경태 위원 아니, 각자 생각이 다르지요.

○ 송석준 위원 준용이라는 것은 이 장에 규정이 없을 때 다른 데를 인용하는 거지 이 장에 규정이 명백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준용규정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에서 토론을 하지 않으시려면 민주당 측이 해 주세요.

○ 유상범 위원 여기서 합니다. 가만있어 봐요.

○ 장경태 위원 토론 안 하실 겁니까?

○ 송석준 위원 여기 다 법률전문가들 아닙니까?

○ 장경태 위원 법안에 대한 토론 안 하실 겁니까? 국회법 토론하시고 다른 법 토론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빨리해 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앞으로 회의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나는 법률전문가 아니지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곽규택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 송석준 위원님께서 간단한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 했는데 그마저도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 취지를 대신 조금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사위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항상 그에 대한 무슨 논평 같은 걸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그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토론마저도 제한을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는……

이 법사위가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그런 해석 무대가 아닙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신다면 그에 대한 재반론 기회도 당연히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곽규택 위원 그러면 재반론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를 원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토론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논평하지 말라’ 그 부분은 제가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 계속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발언을 잘라 버리기에 예의가……

○위원장 정청래 왜냐하면 저걸 하고 나면 지나가고 잊혀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승원 위원 회의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발언이 중단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자, 토론하세요.

○곽규택 위원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조 현금살포법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안은 당연히 우리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체계·자구 심사를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헌법 체계하고도 맞지가 않고 예산의 편성과 심의라고 하는 큰 틀과도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분명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법사위에서 1소위, 2소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경우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그 자리에 관계기관의 장차관 오셔 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런 내용을 거쳐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또 토론을 하면 소위원회의 검토 절차 없이 바로 표결하자고 하실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법사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또 1소위와 2소위를 굳이 구분해서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사위가 운영되고 있는 이후에 과연 소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전혀 열리고 있지 않은데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법상으로 일정 횟수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이 전체회의상으로는 도저히 심도 있는 심의나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보내야 마땅한 것도 전체회의에서만 그냥 표결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은 법사위와 소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13조 원 현금살포법,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 체제에 반합니다. 재정 권한은 헌법상으로 정부하고 국회에 나뉘져 있지요.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그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조 원 현금살포법 자체에서는 벌써 구체적인 지급대상 또 금액 이런 것을 다 명시를 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의 예산편성이 이 법 자체로 그냥 확정돼 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지요. 그 체제는 전혀 우리나라 헌법과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추경을 통해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정부가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법을 따로 만들어서,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헌법 체계하고는 맞지 않다.

이럴 때는 제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전체회의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위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번 회의 때 의결했습니다. 지금 다시 소위로 보내자는 의견은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소급 적용도 될 수 없듯이 일사부재의 원칙도…… 국회법에서 제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회법에는 ‘한 번 의결된, 선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은 발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박지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탄핵 열차를 발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임성근 사단장께서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 신청서 사본을 오늘 오후 3시까지 법사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임성근 사단장, 진실을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다’. 나머지는 다 허위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딱 진실 하나입니다. ‘나는 와인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현 정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고난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군사법원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비서관 통화와 관련해서 군 사법정책에 대한 것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유재은 이시원, 이 두 분 사이에는 십여 차례 올해 1월까지 관련 대면 보고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면 보고를 무엇을 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법무조직 제도개선 방안 보고도, 지금 현재 보면은 2개월간 법무관리관실 파견 인원이 5명이 있는데 생산 문건이 2건에 불과합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도 마침 군 사법정책 개정, 군사법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건들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건도 2건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잘 들었고요.

법사위 직원들은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부분도 관계부처에 전해서 빨리 자료제출하라고 하시고요.

지금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토론 때문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는 이 토론이 끝나고, 절차를 마치고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을 했지만 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토론 발언 신청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향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님 토론향 주세요.

○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 법안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바닥 경기를 빨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법사위원회의 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 또한 빨리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행안위하고 환노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법사위에 보냈기 때문에 신속히 보내는 게 맞고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처분적 법률은 기본적으로 그 법률 자체로서, 법률만으로 행정부와 법원의 개입 없이 구체적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곧바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정부의 대통령에 의해서 금액을 확정할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에 해당이 안 됩니다.

더욱이 가사 처분적 법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만으로 위헌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개 법률이 위헌인지는 공익성 여부를 따져서 공익에 필요하다면 위헌으로 안 보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재정법에 바로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률과 비슷한 법률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법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 법정지출, 국가재정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 법정지출이 바로 우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률과 같은 법률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 아니고 합법 법률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 법률과 같은 비슷한 선례도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도 이미 선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이다 이런 주장은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고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그런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 힘듭니다.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비어 있는 가게가 많고 폐업한 가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5만~35만 원, 정부에서 어느 금액을 지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이 법이라도 통과돼야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바닥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최소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도 이 법의 취지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 법의 정당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법사위는, 우리 법사위가 무슨 상원도 아닌데 빨리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을 통과시켜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법의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신속히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손 드신 분,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이 현금살포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행 헌법 체계나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상대로, 재산이 많은 분도 포함해서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재원 자체가 다 국채 발행을 하거나 재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도 올라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또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정말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이 재원이 집중돼야 하는 것이지 전 국민 상대로 25만 원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방안이고요.

일단 13조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게 전부 다 국채 발행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빚이고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도 불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라서 여러 가지 법체계가 걸러지지 않고 막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법 자체만으로 예산편성, 집행이 강제되고요.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도록 한 게 다른 법 체계상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엉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금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거고 대신에 심의나 결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상호 견제와 균형을 다 무시하고 일단 13조 원이나 되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법으로써 이것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누가 보더라도 위헌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처분적 법률에 해당합니다.

처분적 법률을 저희가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적 법률은 행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 거면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임명한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법안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법안 자체는 우리나라 헌법에 아예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분적 법률을 막아야 이게 가장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막 법률로 해서 법률 만능주의로 갔을 때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 28개 시군구의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코나아이가 100여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임의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급하게 되면 상품권 지급 후 사용할 때까지 시간적 간극이 생기고 또 실제 사용되지 않는 화폐들도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익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에 대해서도 지난번부터 계속 특혜 의혹이 있어 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고가 필요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신 노란봉투법도 저희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번에 재의 요구까지 됐던 것이 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회의 숙의 절차나 걸러지는 절차가 전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대규모,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지요. 그런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노사 균형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은 저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론은 자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우리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경제가 매우 어려워요.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렵고 국민의 소득, 실질소득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행안부장관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할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취약계층 말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중의 하나로서만 말씀드리면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김용민 위원 소상공인들은 채무 조정 문제보다 당장 매출이 올라가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현장에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정책,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희 주무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처에서 7월 3일에 그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오늘 토론하러 나오셨으니까 대표적인 대책 하나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종합대책 중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대책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달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그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김용민 위원 오늘 토론하러 나오셨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정부의 주요 대책을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토론하러 나오셨는데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주무부처에서 말씀을 듣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행정

안전부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이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대책이 없거나 대책이 있어도 알지 못해요. 지금 25만 원 혹은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법에 대해서 현금 살포라고 여당은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 강제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열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도 결국에 예산편성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정부가 동의권, 공포권이 있고요. 도저히 동의 못하겠다라고 하면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회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정말 어렵고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재정을 투입할 돈이 없다, 오히려 이 지원금 지급하면 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재정이 오히려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도 지금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60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정부는 부자 감세하고, 정말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심지어 이 법을 토론하러 나온 장관조차도 제대로 된 정책을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을 우려하시지만 이게 4개월짜리 소멸성 지역화폐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도 이런 지원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한편 최근에 싱가포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경제 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입증됐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지금 대안 없이 그냥 마냥 비판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체계·자구 심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반박을 하는 것인데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그냥 지켜봤는데요. 김용민 위원님 말씀처럼 타 상임위 법안은 헌법과의 충돌, 다른 법과의 충돌 그리고 법률 용어상 문제, 문법에 맞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 법사위에 권한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용상 토론은 사실상 가급적 자제하는 게 국회법 취지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 다시 말씀드리고.

장동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 체계·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일반·추상성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 단 한 번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선택권을 지극히 제한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그것도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적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이 지원금은 공포한 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3개월 동안 준비해서 바로 3개월이 되는 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논의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고 다시 온다고 하면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고물가·고금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과 이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의 경제 상황이 전혀 같다고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경제에 어떤 부담과 역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선택권, 집행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책이 그 순간순간 그때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없고 입법에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이나 다른 시행령을 통해서 행정부에게 정책의 선택권을 주고 그때그때 맞게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 한 번 집행되는 것이고 그 정책의 수단 선택권도 매우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것을 시행할 때는 그때의 경제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국회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물론 법정돼 있는 지출은 당연히 지출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마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모든 지출을 어떤 것이든 다 정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 통과돼서 그 법 안에 국가가 어떤 법정 지출 의무가 생기면 당연히 국가재정법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국가가 지출하라고 예정돼 있는 것이지요.

국가재정법에서 법정돼 있는 지출은 당연히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있는 법이라도 모든 법은 다 통과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25만 원 지원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현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나눠 놓은 그 기본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자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 관련된 내용 말고도 지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개별 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회사의 감사나 임원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미 그 판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없앤 게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이것을 개별 책임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가서 같은 책임의 범위를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개개 사건마다 판단할 문제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가담자가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법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예,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여당 측 위원님들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야당 측의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반대와 찬성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졌고 또 이 토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종결해 주시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빠르게 표결로 논의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닙니다. 토론을 보장하셔야지요. 토론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까 유상범 간사께서도 2명 이상 토론을 보장해 달라라고 저에게 요청했고 그래서 그 조건은 충족됐고 지난번에도 토론을 했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상범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전원한테 기회를 줘야지요. 국회법이 보장하는 상임위 전원 발언권을 보장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 일인당 2회입니다.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일인당 2회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 들으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곽규택 위원**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토론도 못 했었어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표결 처리해도 되나……

○**송석준 위원** 누가 2명으로 한정했습니까?

○**장경태 위원** 계속 논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안 됐어요.

○**송석준 위원** 1명씩은 기본적으로 줘야지요.

○**조배숙 위원** 두 번씩이지요, 두 번.

○**위원장 정청래** 양당에 한 분씩만 더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25만 원 민생지원법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제한할 게 아니지요. 의제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주로 토론해 주시고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그렇게 토론을 막 종결시킬 수가 없어요.

○**조배숙 위원** 전원에 대해서 2회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렇게 토론 종결이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이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송석준 위원** 한 분씩이 아니라 전원한테 보장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좋아요. 우리는 할 말이 많으니까 국민의힘 위원들 전원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서영교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2명이 아니라 2회입니다, 일인당.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두 번이라 그랬지 내가 2명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무슨 두 번째야?

○**위원장 정청래** 지난번에 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저번주에 1명밖에 못 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장 정청래** 자, 토론하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위원장 정청래 알겠어요.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여러분, 포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포운은 포스코가 원청회사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원청회사가 있고 그리고 포운 중간 회사가 있었습니다. 협상을 했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 회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운 노동자들이 400일이 넘게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고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400일이 넘게 농성을 했습니다. 원청은 포스코인데, 원청하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원청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도와주러 내려갔다가 노동자 한 분이 경찰에게 얻어맞는 일도 생겼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럴 때 제가 광양에 있는 포운 노동자들의 농성 장소에 갔습니다. 들어 보니 포스코하고 충분히 협상이 가능했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랑 협상을 하게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포스코가 충분히 들어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운 노동자는 수백 일을 넘게 농성했고 천막에서 투쟁을 했고 또 다른 노동자는 지원 왔다가 감옥까지 가고 경찰 곤봉에 맞아서 피 흘리는 엄청난 소모적인 일이 있었지만 포스코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합의되고 정리됐습니다. 그날로 포운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일상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원회사와 협상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위의 눈치 보느라 중간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청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노조법에 의해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원청과 협상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잡고 흔드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노조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엄청나게 소송을 걸어 오면 이 노동자들이 소송을 당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쌍용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랬습니다. 쌍용자동차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노동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당시에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경찰들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이것을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과한 노동쟁의를 보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한 불법을 보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총선에서 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게 많은 의석수가 왔지요? 그것은 이런 것 통과시키라고 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왜 108석밖에 안 갔지요? 국민의힘은 거부하지 말고 따르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노랑봉투법,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

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사위에서 여기에 떼로 몰려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떼로 몰리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서영교 위원** 떼로 몰려서 어떻게 반대를 하지요?

○**김승원 위원** 들으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말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조배숙 위원** 말이 지나치네요.

○**서영교 위원** 제가 이 얘기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다녀 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요. 클린턴이 이야기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때문에 총선에서도 누구는 참패하고 누구는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뒀듯이 우리는 그것을 여태껏 경험해 봤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사과를 하라 그러세요.

○**위원장 정청래** 무슨 사과를 해요, 이것 가지고.

○**유상범 위원** 아니, 떼로 몰려서 말을 하다니요? 아니, 법적으로……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국문법에도 다 나와 있고요, 민중적 용어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민중적 용어를, 위원들 앞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걸 떼로 몰려서 항의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들한테 이러면 안 되지요.

중진 의원이 언어 순화 좀 하세요. 듣기 안 좋아요, 마주 보고서.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토론하세요.

○**서영교 위원** ‘3부 골프’보다 낫지 않아요?

○**장동혁 위원** 민주당에서 쓰는 용어치고는 품격 있습니다, 충분히.

○**조배숙 위원** 제가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러분들이 진짜 떼로 몰려서 하는 것 같아요.

○**조배숙 위원** 시간 좀 빼 주세요.

왜 자꾸 발언하는데 그려세요? 목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5분 다시 드리세요.

○**서영교 위원** 내 목소리 큰 게 무슨, 뭐가 문제예요?

○**조배숙 위원** 아니, 문제는 아닌데, 남이 발언하는데 발언하는 시간에 얘기하니까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문제 아니니까 그냥 하세요.

빼 달라고 하세요.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위원장께 얘기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세요.

○조배숙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5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22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과한 표현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도 서로 이념 갈등으로 대립이 심한데 국회에서도 그걸 똑같이 해서 이렇게 부딪친다고 하면 국민 전체가 이 국회의 상황을 보고 더욱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안정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노동부장관님 와 계신데요.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된 사안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충분한 논의 없이 야당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갔지만 거부권이 행사되고 폐기가 된 법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때 그 법안과 어떤 내용의 수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지요? 없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그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많은, 우려가 되는 조항들이 추가돼서 이번에 통과됐다. 그중의 하나가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생명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없앴어요. 추가됐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지난번에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다시 재의를 요구했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더욱더 강화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통행을 예상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을 예상하고 그리고 또다시 재의 요구를 하면 다시 또 부결이 되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되는 경로다. 이것은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물론 저희들이 총선에서 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왜 민주……

○이성윤 위원 국민의 뜻이니까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요.

왜 민주당의 지지율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습니까?

○김용민 위원 우리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바보들의 행진이 뭐예요?

○조배숙 위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끼어들지 말고요, 자꾸 그렇게……

○유상범 위원 비아냥거리지 좀 마세요.

○조배숙 위원 좀 품격을 지킵시다. 품격을 지키시고……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

○곽규택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조배숙 위원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 법을 보면 정말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권은 국회에 없습니다.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 금액을 명시하고 있고……

소상공인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분들 도와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이렇게 다, 전 국민 25만 원 하는 게 그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출을 올리는 게 뭐냐? 민간의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흐름도 있어요.

그러면 왜 매출이 안 오르느냐? 사람이 물건을 안 사요. 왜 안 사느냐?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왜냐? 근원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원물가가 왜 올랐느냐? 전기요금 올랐어요. 그렇지요? 최저임금 올랐어요. 그 근원이 다 어디냐? 탈원전에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근원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어렵고 매출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영국 국회의사당을 팔리먼트(Parliament) 이렇게 부릅니다. 팔리먼트는 팔리아(Parlia) 플러스 먼트(ment)의 합성어입니다. 팔리아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이고요 먼트는 플레이스,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 의회 팔리먼트의 원래 뜻은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시끄럽게 떠들라 그랬냐? 그 이전에는 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살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래서 그것이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그립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 여당과 야당의 간극이 국회의사당에 보면 3.9m라 그립니다. 그 3.9m는 양쪽이 칼을 뻗었을 때 칼끝이 닿지 않는 거리를 상징화해서 여야의 거리를 3.9m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행이론처럼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국회는 식물 국회,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49조, 국회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 결과 22대 총선은 야당의 압도적인 다수를 국민께서 몰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야당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표를 준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25만 원, 민생지원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법사위는 사실은 내용 토론보다는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해야 되는데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는 없고 내용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 토론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체토론을 아직 못 했어요.

○**유상범 위원** 대체토론 해야지.

○**곽규택 위원**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토론한 적도 없어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는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법안을 우리와 토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곽규택 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송석준 위원** 즉각 중단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최소한 두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송석준 위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아까 조문 하나하나 읽은 것 들었잖아요. 전원 위원한테 발언 기회 주셔야지.

○**위원장 정청래**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론을!

○**유상범 위원** 정청래 위원장!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중단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박준태 위원** 이게 무슨 의사진행 방해예요?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곽규택 위원**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권한쟁의까지 됐으면 이걸 지켜야지.

○**위원장 정청래**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장관님 모셔 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결국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갈 거면 뭐 하려, 아예 처음부터 그냥 표결하지.

○**곽규택 위원** 위원장,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위원장 정청래**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중단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토론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내려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나라 망치는 2개의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돼요? 즉각 중단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국민이 다 보고 계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청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민생 회복한다고 하면서 민생을 망치고,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는 법을 만들고…… 노란봉투법이 누구를 위한 노란봉투입니까? 누구를 위한 노란봉투예요?

○**서영교 위원** 여당이 민생지원금 반대하는 것 국민이 보고 있어요.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서로 간에!

최소한을 지켜 주지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그냥 일방 통과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송석준 위원 중단시켜 주세요. 여기서 즉각 폐기합시다!

○ 곽규택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김승원 위원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 위원장 정청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송석준 위원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해 주세요. 절대 법사위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 송석준 위원 안 돼요. 중단해 주세요, 중단!

○ 곽규택 위원 아니,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조배숙 위원 토론이 안 끝났으므로 위법입니다.

○ 송석준 위원 위법입니다, 위법!

○ 위원장 정청래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습니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내 소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규택 위원 토론을 해야지요, 토론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법사위원이!

○ 박준태 위원 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는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 김승원 위원 민생을 살립시다, 국민의 고통을 좀 봐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예요, 지금?

○ 유상범 위원 여기 국민의 고통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 곽규택 위원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곽규택 위원 이의 많아요!

○ 장동혁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즉각 중단시켜 주세요! 강제 종결권 없어요. 중단시켜 주세요!

○ 조배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세요!

○ 김용민 위원 표결했잖아요.

○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김용민 위원 나라 망치는 거부권이나 좀 거부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박준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게 뭡니까. 야당 위원님들 다 앉아 계시고 다 똑같이 손 들고 여당 위원님들도 다 일어서 있고, 계속 이어 가실 거예요?

○송석준 위원 장관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부끄러운 짓입니까. 나라 망치는 법을 이렇게 뻔뻔하게!

○곽규택 위원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거 반복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 물러가세요!

○김승원 위원 민생을 살립시다. 좀 앉으세요.

○장경태 위원 민생 회복 반대당!

○이성윤 위원 민생 회복 반대당!

○위원장 정청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3.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8)

4.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6.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12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부터 제6항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까지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와 관련된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장경태 위원 나라 망하고 있는데 경제 망친 당, 경제 망친 정권이 할 말이 있습니까?

○박준태 위원 이런 역지가 어디 있습니까!

○김용민 위원 장관이 대안도 없어요, 대안이.

○위원장 정청래 이상민 장관님, 이정식 장관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사위는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회부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자체 없이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 조사 계획서 채택입니다.

이에 8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조사청문회를 포함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 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 잠깐 정회 좀 합시다.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철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준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정회라도 하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정회를 합시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법사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위원** 다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빨리 물러나세요!

○**위원장 정철래**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박준태 위원**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은 적 없어요.

○**위원장 정철래**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고발하세요, 그러면!

○**박준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퇴거시키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 혼자 회의하세요, 혼자!
- 위원장 정청래 퇴거 명령합니다.
-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청래 퇴거 명령합니다.
- 곽규택 위원 앉아 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 김승원 위원 지가 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 김용민 위원 지가 뭔데가 뭐예요? 예의를 좀 지켜요, 예의를!
- 장경태 위원 지가? 뭐 하는 거예요!
- 곽규택 위원 그건 또 잘 들으시네!
- 박지원 위원 어떻게 건방지게 니가 뭐야 그런……
- 장경태 위원 아니, 인성이 진짜……
- 곽규택 위원 이럴 거면 혼자 회의하시면 되지 회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 장경태 위원 정상적으로 표결을 하잖아요. 다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혼자 했어요, 누가?
- 유상범 위원 이럴 거면 뭐 하러 회의를 해요, 이럴 거면 뭐 하러 회의를 하냐고?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서로 간에 지킬 건 지켜야지. 예의가 있어야지, 서로 간에!
- 김승원 위원 말씀 좀 가려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정청래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 다시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상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송석준 위원 반대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상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반대입니다, 반대.
-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송석준 위원 말도 안 되는 안건이에요. 허위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안건이에요!
- 위원장 정청래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표결)
- 내려 주십시오.
-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표결)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발 좀 이러지 마시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안 되는 법을 반대를 안고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 김승원 위원 아니, 조사도 못 하게 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없습니까? 없네요.
- 내려 주십시오.

(장내 소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사 목적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조사 목적, 소추 대상자 검사 김영철은 검사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고 모해위증을 교사하였으며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검사로서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2일 소추 대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장경태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같은 날 개의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음.

이에 따라 소추 대상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 헌법질서 회복과 헌법 수호를 위하여 소추 대상자의 직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사 방법 중에서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실시하고 청문회는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단,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130조(탄핵소추 발의) 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법 130조, 131조에 따라서 그 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조사 방법은 청문회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5항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유상범 위원** 채택 건에 대해서 토론 안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일단 하고 나중에 토론을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4항을 먼저 해야지요. 4항을 하고 나서, 토론을 하고 나서 하는 거지 4항도 끝나지 않았는데……

○**김승원 위원** 간사님, 그거 위원장님 재량 사항입니다. 4, 5, 6건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각 항목마다, 4항, 5항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채택 건의 토론을 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위원장 정청래** 4항은 지금 의결이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채택을 해서 의결은 했지만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왜 또 한 명입니까?

○**위원장 정청래** 양쪽 다 한 명씩.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국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꽈규택 위원께서 저에게 잘못 알고 항의를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저에게 오셔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잘못 아시고.

그렇지만 오늘 법사위원장이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나가 뭐야!’ 이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꽈규택 위원께서 공개 사과를 하시든지 또 그러한 발언을 취소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원의 권위를 위해서 또 국회의 상호 존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는 그거 못 들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나가 뭐야?’.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시지요. 원래 토론 안 드려도 되는데……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지금까지 의제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토론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위원장께서는 토론을 일방 종결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제가 국회법 60조, 103조, 108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 우리가,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차적으로 먼저 간사 간 협의를 해서 발언을 제한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은 각 위원별로 2회 이상의 발언은 보장해 주는 것이, 그리고 나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라는 식으로 다시 일방적으로 종결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은 지금 계속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위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는 이거 위원장님께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법사위가 논의를 더 해야 되냐?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률은 본회의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대부분 100%, 100%라고 하면 과할지 몰라도 거의 모든 법이 사실상 추가 토론 없이 종결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일단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

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후폭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여러 가지 법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라면 다음에 제가 법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그 완결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토론할 때 비로소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이고 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되고 충분하게 위헌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법이라면 당연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법을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행정부에 던져 놨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그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소위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을 만들어서 끌고 가시면 결국은 또다시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의 요구가 행사되고 이럼으로써 끊임없이 정쟁이 반복되는 장을 우리가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장의 제일 선두에서 있는 게 법사위예요. 법사위에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니까 결국 정치의 혐오가 나오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디 가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이런 자격지심까지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의사진행이 갖고 있는 그 폐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이치가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집권 여당입니다.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야 합의된 것만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헌법적 발언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게 행해도 되고, 국회에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통과시키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세요.

○**송석준 위원** 국회법을 여기시잖아요, 지금. 국회법 60조를 제대로 해석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것은 다 역지사지해 보면 아는 거고요.

○**송석준 위원** 왜 대통령을 여기서 비난합니까, 법사위장에서.

○**위원장 정청래** 조중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권의 행정 폭주, 거부권 폭주는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주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주장만 하면 타결되는 것 있습니까? 해결되는 것 있습니까? 의결되는 것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내가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헌법에서 무한정 주장과 무한정 토론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라고 헌법이 지금 보장하고 있어요.

○**유상범 위원**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다수결로 표결하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다수결도 토론 다음에 다수결이지, 토론 없이 다수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승원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 그거야말로 입법독재지. 입법독재하면서 마치 자꾸……

○**위원장 정청래** 자, 그래서……

○**서영교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 준법, 법을 지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위원장 정청래** 저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송석준 위원** 법사위원장이 이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항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거부권 폭주라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송석준 위원님 경고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곽규택 위원님의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경고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1대 때 후반기 국민의힘 위원장님이 법사위에 계셨을 때 아예 현안질의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토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번 현안질의 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안을 볼모로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러니까 법안을 볼모로 해서 민주당 위원들의 입을 막은 그런 사례가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위원장님이 그래도 토론할 기회 드리고 하는 것은 21대보다는 훨씬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상범 위원** 아니,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렇게?

○**김승원 위원** 두 번째는 이 앞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시지만 지금 법사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당에서 얼마나 세게 하고 있습니까? 윤리위 제소를 했지요. ‘정청래 위원장님 방지법’ 그런 법안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서 모욕 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없애고 그래야 토론도 되고 간사 간 협의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도대체 뒤로는 계속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무슨 법사위에 와서 토론권을 달라,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자 이런 말씀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송석준 위원** 우리 아니에요. 앞에서 공격하지요.

○**곽규택 위원** 아니에요.

○**김승원 위원** 다음으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때 이곳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체계·자구에 대해서만 법사위에서 다루기로 했고 상원 기능, 옥상옥 기능 하지 말자고 합의를 굳게 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토론

을 보면 법안의 내용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곽규택 위원 민주당이 내용을 건드렸지요.

○김승원 위원 아이, 좀 끼어들지 좀 마세요!

서로 그 부분은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민주당도 맨날 끼어들잖아요.

○김승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체계·자구 심사를 넘는 발언에 대해서도 즉시 즉시 중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의 요지가 뭔지를 먼저 물으신 다음에 그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 주시고 발언을 허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임 김도읍 위원장 시절에 했던 걸 사실과 달리 얘기하면서 여기서 비난을 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유상범 간사께서 토론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토론하세요, 한 분.

○장동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조금 이따 하세요.

토론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아닙니다.

지금 토론을 하자고 했으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한 분씩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 몇 분을 줍니까?

○위원장 정청래 3분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토론은 3분 주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 정청래 5분 하세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왜 이렇게 위원장님 약해지고 그래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 5분, 5분 하세요.

○유상범 위원 먼저 이 법안, 2개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92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데 그것은 부결된 법, 안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상임위 계류한 것을 2소위에 보내자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와 전혀 관계가 없이 계속된 현안에 대한 주장이니까 그걸 근거로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영철 탄핵소추안 계획서. 여기 자료가 뭐냐 하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번, 2024년 5월 6일 뉴탐사 ‘장시호 녹취파일 단독입수, 윤석열·한동훈 사단의 더러운 거래, 피의자와 불륜, 중언연습, 회유공작은 일상이었다’. 2번, 2023년 9월 5일 조선일보 ‘돈봉투 수수 정황 협역의원 19명 법정서 공개’. 3번, 2023년 3월 5일 한겨레신문 ‘코바나 무혐의 논란, 직무관련성 인정 않는 게 더 힘들다’. 4번, 2023년 3월 6일 연합뉴스 ‘검찰, 김건희 삼성전자 고액 전세권 의혹 무혐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 자료가 단 이 4개의 언론보도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면 되지요.

○**유상범 위원** 이게 아무리 다수당이고 힘이 세다고 그래도 무엇을…… 그래도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벌일 때 기껏 첨부한 게 이 4개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언론보도만 가지고 이것을 탄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핵제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거움이 이제 22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일종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도 4개 붙여 놓고 탄핵한다면 이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언론보도만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언론보도 가지고 다 탄핵할 수 있겠네요.

국회가 아무리 정쟁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탄핵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물론 형식적인 법 절차는 거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내용의 타당함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시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당시 문제된 생일날 생일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 출정 기록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김영철 검사가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도 장시호가 이미, 본인이 김영철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밝힌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즉 장시호 관련된 부분도 증명이 다 됐고요.

○**김용민 위원** 김영철 변호인이에요?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피의 사실 공표, 그 안의 자료 중 어디에도……

○**김용민 위원** 나가서 변호사 하세요, 그냥. 변호만 하고 있어, 어떻게.

○**유상범 위원** 김영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리고 김영철 검사 조사해야지요,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일 때 국회가 이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우리가 제도 이상 권력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제도 이상의 권력 행사, 어찌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유상범 간사님, 제도적 권력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토론 한 분 하시지요.

○장동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합니까?

○박준태 위원 장동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토론을 하고 나서.

○유상범 위원 안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시라고.

○위원장 정청래 토론 한 분 하세요.

김용민 위원 토론하세요.

○곽규택 위원 뭘 억지로 해요, 또. 넘어가면 되지.

○송석준 위원 할 말이 없을 텐데.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들 하세요. 불필요한 얘기해서 자꾸 자극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왜 한쪽에만 뭐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가족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가족들도.

○유상범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데 김용민 위원 계속 말하고 있는데……

○곽규택 위원 계속 깐족깐족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청래 자, 얘기하세요, 토론하세요.

○김용민 위원 안 나서려고 한 거지 할 말이 없지 않고 할 말이 많지요.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신이 아니에요. 여당 위원님들은 검사 탄핵에 지금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권력의 본질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제도는요 정계 절차입니다, 정계.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정계 절차 중에서 검사는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개별사건을 다루니까 정계, 특히 파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에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해 봐요, 금방 파면됩니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이런 혐의 사실들 있으면 당장 그 조직에서 감찰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혹은 품위유지만 손상시켜도 강력한 징계 받았을 겁니다.

검찰은 절대 쳐별 안 하고 절대 징계 안 해요. 이런 의혹이 나왔으면 검찰에서 그러면 최소한 사실조사라도 해 봤습니까? 감찰이라도 해 봤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한번이라도 좀 반성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검찰은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자기들이 직접 감찰하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지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침묵합니까? 동조하는 겁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뒀습니다. 수많은 검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왔어요. 일부는 수사로도 이어졌지요, 김학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은 것들은.

○**유상범 위원** 혀위 출국금지 했잖아.

○**김용민 위원** 혀위 출국금지가 아니에요. 지금 무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 보십시오. 검사들이 잘못했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처벌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시효도 다 지나서 징계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지요. 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못 하고 수사도 못 한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검찰을 옹호합니까?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검찰권 행사냐’ 강력하게 규탄하고 먼저 탄핵하자고 나섰어야지요. 아니면 적어도 법무부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라’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요.

검사가 판단하는 게 오류가 없습니까? 검사가 자의적,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사건에 반영 안 합니까? 혹은 정치적 신념 반영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유상범 위원** 합니까?

○**김용민 위원** 합니다.

○**유상범 위원** 누가요?

○**김용민 위원** 유상범 간사님, 검사 시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안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말 한번 나중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이 검사 시절에 얼마나 정치 검찰이었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런 검사들이 정치질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 독재국가니 이 꼴이 됐고 여당 위원들은 검찰한테 겁을 먹어서 한마디도 못 하고 검사 탄핵하자고 하니까 검사들 변호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 탄핵이라도 우리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됩니다.

검사 탄핵의 사유가 부족하다고요?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조사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고 법무부나 검찰이나 관련 자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 됩니다. 충분히 확보된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는 아닌 것 같다 혹은 위법 사유는 없는 것 같다,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에서 빼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인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진짜 여당은 검사 변호인들 아닙니까? 검사 로펌입니까?

○**유상범 위원** 누가 거부해요, 이걸?

○**김용민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의도에 여당이 없고 서초동에 여당이 있다, 검찰이 여

당이다 이렇게 다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혐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론은 무의미하고 조사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본회의장에서 검사 탄핵안을 바로 가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키는 것은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 탄핵할 사유가 없다 그러면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우리가 보고를 해서 탄핵 절차를 중단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이 검사는 탄핵시킬 충분한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탄핵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탄핵을 가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사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민주당에게 토론을 한 번씩 보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5항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탄핵소추사건 관련 서류제출요구는 국회법 제13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위원회, 제5조 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여기는 조사반을 뜻합니다—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조항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신 요구를 포함하여 8월 1일까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8월 9일까지 제출할 것을 국회법 제131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의힘 반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진행이 됩니다. 자료제출하라는 것까지……

○유상범 위원 그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이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유상범 위원 하나 주세요. 아까 원래 토론하고 의사진행발언 주기로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6항 하고 할게요. 7항 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채택된 조사 계획서에 따라 2024년 8월 14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아직 간사 간 협의가 안 됐답니다. 양 간사님께서는 오전 회의 중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협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점심 정회 후 속개 시 위원장이 적절하게 판단하여 조정안으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항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장동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안건 중에 법률안 토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권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현 법상의 기관으로서 개개 법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좀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속기록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와 과정을 잘 거치는 것이 법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주시고 그것이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때 주의를 주시거나 발언을 제한하시는 방법도 있고 발언 내용이 이미 다른 위원이 충분히 반복해서 한 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하면 그때 발언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안에 대해서 개개 위원들이 발언할 내용이 있고 본인의 의견을 밝히려고 하는데 몇 명을 정해 놓고 또는 횟수를 정해 놓고 기계적으로 진행할 것은 저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발언 내용을 보고 제재를 하시거나 제한하셔도 좋는데 발언할 수 있는 그래서 개개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본인의 그런 견해를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판단컨대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타 상위법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권만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토론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만 토론하겠다고 해 놓고 체계·자구 심사 이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경향성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발언을 끊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끊는다면 또 반발할 것입니

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처럼 합리적으로 발언을 하시면 제가 왜 불합리하게 그것을 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이전에 우리 법사위는 지금 정시에 시작하는 것은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정시에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끼어들기하지 말라 하는 부분을 회의 때마다 수십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끼어들지 맙시다라고 큰소리치면서 끼어들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때 보면 반장이 제일 큰 목소리로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해’라는 목소리가 제일 소음입니다. 제일 크게 떠들어요. 그런 것처럼 ‘끼어들지 맙시다’하면서 끼어드는 발언을 해요. 상호 자기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끼어들지 말고 손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끼어들면서 하니까 의사진행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고.

장동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사진행에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특히 끼어들기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7. 업무보고

가. 법무부 소관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다. 군사법원 소관

(11시49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는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 하실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사법원 순서로 각 기관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현안 위주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3개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 업무보고 전에 아까 김용민 위원 발언과 관련해서 신상발언 1분만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안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안 주실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예.

인사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주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보고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실장 구상엽입니다.

검찰국장 송강입니다.

감찰관 류혁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장직무대리 송중일입니다.

인권국장 송재현입니다.

국제법무국장 정홍식입니다.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처리 현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 자문, 국가송무·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범죄예방, 인권옹호, 국제법무, 범법자의 교정·교화,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 정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70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쪽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무처리 현황은 9쪽부터 28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주요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헌법가치 수호 및 법질서 확립, 민생범죄 엄정 대응과 재범 방지, 인권을 옹호하는 따뜻한 법치,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헌법가치 수호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 중이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집단행동 등 반법치행위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단하는 한편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 체불 사범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전자문서 생성·유통 플랫폼을 마련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오가는 사건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날로 중요성이 커져 가는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법률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민생범죄 엄정 대응과 재범 방지입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등 재범 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범정부 대응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도박 운영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미신고 행위에는 경찰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해자 접근 정보 자동알림 시스템을 활용해 스토퍼와 같은 전자 감독 대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정시설 내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 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멘토링 등 지원·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입니다.

범죄피해자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법무부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와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선을 위해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개를 선정 추진 중입니다.

특히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올해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고 센터와 전담인력을 관리할 지원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졌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자 지원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과 응급조치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조사장비를 도입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용시설 증개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준비 중이고 난민 심사를 위한 화상면접 제도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전자주주총회,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하여 가족법 개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부동산·법인·등기 전자신청과 화상 대면을 통한 공정증서 작성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화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국제법무국에서는 정부부처의 주요 국제소송 분쟁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사건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최근에는 중국 투자자 관련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균형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난민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확충 등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수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정식 시행하였고 지방 관광 촉진을 위한 디지털노마드 비자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유학생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지자체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방안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유통·관리 업무를 지원할 통합적 계절근로제도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입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 과밀 문제는 적정한 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뿐만 아니라 기존 수용동 증개축도 병행하여 2028년까지 수용 정원을 약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교정시설 신축 이전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예산편성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입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외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였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최근 정부조직 개편 동향을 고려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5쪽 수용시설 내 의료인프라 확충입니다.

교정시설, 소년원 등 수용시설은 비교적 낮은 보수 수준과 원격지 근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의무관 충원율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봉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수준으로 의무관 연봉을 책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진료 체계를 활용하거나 지역 정신과병원과 협력하여 교정시설과 소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 인프라 확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법률플랫폼 등 리걸테크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

리걸테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1월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리걸테크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방지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는 법률서비스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7쪽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 확대 중입니다.

마약범죄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작년 6월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약 중독 수준에 따라 적정한 치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과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은 51쪽부터 53쪽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략하지 않고 법무부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티몬·위메프 사태가 걸잡을 수 없이 연쇄 부도, 연쇄 피해가 예상되는데 가장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져 가지고 그리고 또 큐텐 구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막겠다 그랬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 같아서 혹시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그건 언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법무부에서 당장 저희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피해자도 있고요 중간에 또 물건에 대한 대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관련된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아도 부도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수사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좀 접근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새로이 다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소임을 안고 출범한 이래 그동안 수사기관으로서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기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겸허히 듣고 기관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수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신임 차장입니다.

이형석 기획조정관입니다.

차정현 수사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현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좀 생략드리고 13쪽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력 운용과 업무체계의 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검사 및 수사관 결원 직위를 우수 인력으로 충원하는 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사관 3명을 충원했고 어제는 차장 임명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 수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은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수사 업무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재선 및 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 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그간 공수처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한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수사기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검찰청, 경찰청과 협조 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협력 회의 정기화 등 업무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검경 수사 인력의 공수처 파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수사 기반 확립을 위한 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체계 보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인력 증원이나 수사·기소 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안 유지 및 수사 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독립청사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정원 확대 등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22회 국회 법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반도와 인태 지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예 선진 장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군 사법 운영을 통해 군 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장병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국방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와 군 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주요 간부입니다.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오영대 인사기획관입니다.

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다음은 군 사법 관계자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현수 육군 소장입니다.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육군 준장입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장 서성훈 육군 대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으로부터 결연 순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현황과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추진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는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쪽입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후 2023년 민간 이관 범죄 현황은 1600여 건으로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개선·보완을 위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신뢰받는 군 사법기관 운영으로 국방부는 민·군 기관 간의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군사경찰은 직무 수행의 법령 근거를 정비하고 민·관 수사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군 관련 안보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징계제도 개선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 초급간부 복무 의무 고취를 위한 군인 징계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국방 소송은 현재 전군 2658건을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효율적 소송 수행으로 공평,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 사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6년 1월 완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024년 정부 입법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등 총 18건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0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는 공정한 군 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신원식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의도 하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닙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 또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감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을 향해서 ‘지가 뭔데’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저 개인에 대한 욕설, 반말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사위에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정부위원들 그리고 언론인들, 보좌진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규택 위원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지원 위원님과 제가 먼저 조금 언쟁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꺼져 있던 상태였는데 박지원 위원님이 저를 보고 ‘너 끼어들지 마’ 이렇게 이제 반말을 하셨어요. 저는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왜 반말을 하시냐’ 그렇게 고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지원 위원님께서 ‘당신보고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의장에서 빛 때 제가 인사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유상범 위원에게 ‘너 끼어들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정당한 말씀이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박지원 위원님께서 제가 마치 사과를 한 것처럼 제가 무슨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다들 지켜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중요한 안건인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당 간사와 저와…… 앞에 나가서 상임위원장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왜 토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렇게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퇴거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정도의 항의에 퇴거명령을 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가 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보고 ‘니가 뭔데’ 했으면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삼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거를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뭔데 퇴거명령을 함부로 하고 그런 항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퇴거명령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항의하면 다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 들었습니다.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 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꽉 규택 위원의 발언권은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진우 위원 그거 질서유지권하고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반말이 오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질서를 어지럽 혔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지 주진우 위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36분)

○위원장 정청래 업무보고 기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순서이나 오전 회의 시 간사 협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깔아 주세요, 자료 깔아 주세요.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간사 를 통해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하여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청문회가 8월 14일에 개최될 예정이므로 법률상 송달 기한을 고려할 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인·참고인 명단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을 오늘 의결하고자 합니다.

증인·참고인 명단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 박은정 위원님.

그러면 세 분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참 재미있긴 하네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을 서로 간에 논의하면서 상호 간에 증인 신청 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에 대해 반영을 요청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정무 적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애초에 서로 간에 초안으로서 협의를 위해서 제안했던 안인데 그 안이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넣고. 소위 탄핵소추 청문회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무슨 보복적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게 협의가 필요한 건지,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 쪽에서는 김영철 검사는 당사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 또 이 부분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는 게 어떻느냐.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정근 씨를 제외하고는 철회하겠다라고 협의를 했고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가 초안을 낸 것이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신청한 사람 외에 여기 보니까 권성동 의원, 주진우 의원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의사일정에 추가시켜서,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만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협상 과정마저도 과정 속에서 밀고 당기는 게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협의인데 그 협의 내용을 가지고 가더니 느닷없이 또 이렇게 여기 있는 위원들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이렇게까지 안을 다 만들어서 올려놓는 걸 보니까 참 창의적이시고, 굉장히 이 전체회의에 대해 제대로 진행할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가끔 정상적으로 사고할 때 우리가 느꼈던 부분 이런 부분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참 순간 당혹스럽게 여기게 되는데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시는 거 다 좋고 진행하시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될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오늘 하루만 그칠 게 아니라 이미 지난 한 달여 이런 모습이 보여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앞으로 법사위가 과연 제대로 된 상임위로서의 역할을 할지 또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간사님, 확인 좀 하겠는데요. 양쪽 간사가 이거 가지고,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명단을 여기까지 올리자, 저기까지는 올리지 말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김승원 위원 다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있었지요, 왜 없었어요. 취소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 줘라. 그리고 이 안이라는 것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한쪽 안으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느닷없이 본인들이 제출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사람을 막 이름을 추가하고 이렇게는 원칙에 맞지도 않아요.

○위원장 정청래 일단 잘 들었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우선 중인 채택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저는 꽝규택 위원님께서 ‘지가 뭔데’라고 한 발언은 취소하시고 위원장님께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단어가 용인이 되면 다양한 버전의 그와 비슷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계속 우리 법사위에 선례로 남아서 난무하지 않을까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차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녹취록을 통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시호 씨가 예전 재판받을 때 검사가 던져 준 ‘너는 이렇게 발언하면 돼’라고 한 본인의 자백성 그런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때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장시호 씨에게 중언 사항을 던져 줬다고 하는 김영철·박주성 검사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탄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박주성 검사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저희 탄핵 사유에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 시 왜 갑자기 사기업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에 수사받는 기업들의 협찬이 그렇게 몰렸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야말로 뇌물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이치파이낸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이 법원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나왔는데 도이치파이낸셜이라고 해서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공모주보다도 더 저가로 저렴하게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매수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지금 계속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권오수 씨와 관련된 것인데 당연히 그러면 김건희 씨도 나와야 되고 권오수 씨도 나와야지요. 그런 데 대한 증인 채택을 저희는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탄이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탄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 측입니다. 저희는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불법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이런 부분을 검사의 탄핵 사유로 삼은 것입니다. 수사 범위인지 아닌지는 전문적인 법학자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수님들이 나와서 발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타기로 민주당 의원들을 넣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최순실, 박근혜 탄핵 때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던 권성동 의원님이라든가 주광덕 의원님도 나와서 그러면 발언 해라 이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그 결과를 보고하고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검사의 탄핵 제도는 검사가 마치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탄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검사 직무는 완전성, 무결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탄핵 제도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문제가 된 탄핵 소추된 검사가 탄핵소추된 사유들을 보면 굉장히 중대합니다, 만일에 인정될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에 대한 파면 제도는 없습니다.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탄핵소추만이 가능합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상 해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위법한 수사, 중대한 위법이 있는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직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탄핵소추된 김영철 검사에 대한 위증교사, 별건수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직무유기 이 의혹들은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중대한 위법성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별건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청법과 시행령상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가능했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위법한 시행령에 기한 검사의 직접수사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특검법에 저희가 수사 대상으로도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된 조사에서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보태면요.

장동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봐도 증인의 무슨, 아무리 우리 여야가 정쟁을 하지만 법사위에 있는 우리 위원들 이름들 명단도 제가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하는 게 좋겠다,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로 최소한의 선은 지켜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과권택 위원님한테도 경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작하셔서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사실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고 했던 발언을 위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검찰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고요. 여야는 또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안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많은 혼란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 부인을 증인으로 이렇게 계속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야 간사님께서 증인에 대한 참고인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 뺄 수 없다, 빼야 된다 그 합의가 안 되면 그분들은 증인·참고인으로 남겨 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저는 이 명단 중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굳이 부르는 것이 이 사건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빼는 것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간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같이 빼는 것이 맞겠다라고 의견이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증인이나 참고인에서 제외하고 저희들이 채택을 하는 게 맞지 이걸 전체로 놓고 의견이 안 맞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원래 원안대로 그냥 다 올리자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지금이라도 간사님들께서 다시 협의를 하셔서 양쪽에서 이건 정말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두 분 여야 간사님께서 이건 공히 빼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만이라도 빼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공감하면서요, 양쪽 간사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자, 토론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팬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누구 하나 해 주세요, 토론 종결.

○서영교 위원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동의합니다’ 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태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토론 종결을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세요.

이건 다 드세요, 그냥.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토론 종결하자는 겁니다.

다 들어 주세요, 그냥. 팬찮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은 토론 종결 표결을 부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토론 종결……

○유상범 위원 그냥 하세요, 팬찮아요.

○박준태 위원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건건 다 표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냥 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부해 드린 명단 중 증인의

경우 1~20번까지 총 20명, 참고인의 경우 38~42번까지 총 5명에 대하여 8월 14일 개최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그걸 하시되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표결을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하시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번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20번까지 증인 그리고 참고인의 경우 38~42번까지 총 5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 기권 0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업무보고

가. 법무부 소관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다. 군사법원 소관

(14시56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위원장은 국회법 49조 1항과 국회법 145조 1항·2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반성이나 성찰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의미는 다시는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약속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런 다짐과 약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경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들거나 반말을 하거나 또는 막말을 하거나 욕설이 나올 경우 실제로 의사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끼어들기 하지 말고 조심하자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경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한 이유는 145조 1항에는 일단 경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렸고 경고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좀……

○유상범 위원 잘못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곽 위원님, 이리 오세요.

○유상범 위원 잠깐 계세요.

위원장님, 질서유지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여러 다종이 모여서 굉장히 회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때를 전제로 해서 질서유지권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질서유지권이라는 것이 소위 최루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것은 반복적으로, 소 귀에 경 읽기처럼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들의 의제에 관해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제한을 하려면 103조, 108조 조항을 감안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희망하는 위원들에게 최소한 두 번의 기회는 주어야 좋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이것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이것 제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회의 그 결정을 하기 전에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그것이 마치 본인에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항의를 하면 그것이 질서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위원의 발언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 발언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의 일반 원칙인데 위원장께서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니 위원들은 그 부분을 항의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의를 한 것이고, 항의한 시간이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오래돼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했습니까? 아주 짧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위원들의 발언은 끊임없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신다면 앞으로 소수당에 있는 위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최소한의 논의가 되고 숙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제한을 하시니까 결국은 모든 언론에서 ‘민주당 일방 통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돼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질서유지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지원 위원님이 반대로 저한테 반말하고 한 것은 사과를 요구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간사님, 회의 중에 모든 걸 떠나서 유상범 간사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아까 떼로 덤벼든다는 얘기 나왔잖습니까, 사람 앞에 놔두고.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본인이 존중받으려면 본인부터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고요.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신상발언 신청하는데 왜 안 받아 주세요?

○박균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손을 제일 먼저 들고 아까부터 했는데, 이다음에 바로 주세요.

○박균택 위원 꽝규택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막말을 했지만, 박지원 위원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을 때 본인이 자기한테 그러는 걸로 오해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까지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한 적은 있지만 사과한 적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인격의 문제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고 또 그것을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고 도대체 내가 오해해서 실수한 걸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누구 들으라고 누구에게 잘 보일 일 있어서 그렇게 언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언행이 당연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행위인 것처럼 예고하는 저런 언행을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위원회나 의회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내리신 조치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본인이 사과를 할 때 그때 받아 주시는 걸로, 발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로 유지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양쪽 얘기 다 들었고요.

제가 무작정 발언권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과한다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법사위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표현은 안 하시지만, 진행하는 위원장한테 항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시고요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

고. 그 발언이 잘됐다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지금 옹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지가 뭔데’ 발언할 수 있다,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면 그 발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옹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하세요. 없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 발언이 나온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은 본인이 제공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께서 얘기했어요, 원인을 따지다 보면 단군 할아버지까지 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인 사과를 넘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후라도 생각이 바뀌시면 사과를 하시면 발언권 중지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사과하고 그냥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안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은 신상발언 신청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현안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3선 의원이 요청하면 하나 들어줘야지요. 계속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아까부터 애타게 요청을 드리는데……

○**조배숙 위원** 신상발언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3선 의원 얘기는 들어줘야지!

○**위원장 정청래** 질의시간은 간사님과 합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송석준 위원** 간사님, 가서 좀……

○**서영교 위원** 순서에 가서 하세요.

○**주진우 위원** 몇 번 신청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들 하세요.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질의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지면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기관장님들도 질의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기회를 주세요.

○**송석준 위원** 왜 신상발언 안 주시는 거예요? 아까 김용민 위원님 발언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 심히 모독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기회를 주세요, 그러지 말고.

○**위원장 정청래** 간사님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송석준 위원** 우리가 검사가 무서워서 검사의 변호인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자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자,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발언보다 훨씬 수위 높은 동료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경고 한마디 없고……

○**박준태 위원** 발언권 주시는 게 원만한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냥.

○**송석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 한마디도 없는데!

(장내 소란)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송석준 위원** 아까 속기록…… 행정실장, 속기록 갖고 오세요.

이렇게 동료 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그것은 방치하고……

○**서영교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먼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제지하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이 한마디 한 걸 갖고서 사과하라고, 발언권까지 중지시켜요?

○**위원장 정청래** 회의장이 소란하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분간 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우선 저희가 7월 26일 날 김건희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 청문회를 했는데요. 그때 증인으로 최은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최은순이라고 하는 증인이 나오지를 않고 제가 어떤 언론에 보니까 여기 최은순의 아들이에요, 김진우.

(영상자료를 보면)

최은순의 아들 저기 나와 있는데요. 김진우가 그 26일 날 차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골프 가방을 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최은순 증인이 같이 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분노했습니다. 국민께 꼭 알려 드리고 싶은 장면인데요. 이것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고 골프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최은순 씨가 골프웨어를 입고 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정말 국민에게 꼭 알려 주고 싶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나오지 않게 된 경위와 불출석사유서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출석사유서를 다시 그때 어떤 경위였는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서영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은순 중인의 경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김건희 특검 때 다시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그때 그 부분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아까 시끄러워서 중단됐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납득이 갈 만한 조치를 취해야 이게 정상화되는 것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송석준 위원님 때문에. 질의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질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동료 위원들을 모독한 행위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서영교 위원 질의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앉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신 다음에 재개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과규택 위원 나갔는데 왜 그래요?

○유상범 위원 김용민 위원의 발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앉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 좀 불러 주시고.....

○위원장 정청래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왜 발언권 중지 계속 시켜 놓고 김용민 위원의 모독 행위를 방치합니까?

○김용민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왜?

○위원장 정청래 계속 의사진행 방해하시겠어요?

○송석준 위원 방해 안 해요. 제가 하는 게 방해입니까?

○위원장 정청래 묻겠습니다.

의사진행 계속 방해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이건 정당한 저의 발언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발언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님이 그냥 계속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제가 발언권 없지만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항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준태 위원 이것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지요.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이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이것 여기서 속기록에 남는 기록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이 모독당 했는데 이것 방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뭐가 모독이에요? 사실을 얘기한 거지.

○송석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동료 위원 좀 불러 주세요.

○김용민 위원 사실을 얘기한 게 무슨 모독이냐고!

○송석준 위원 정상화시켜 주세요, 정상화.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가 뭔데’라고 하는 막말을 해 놓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이 무서워서 검찰의 변호인이라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모독 행위인지 아십니까?

○서영교 위원 ‘지가 뭔데’라고 하는 막말을 해 놓고 무슨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장경태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김용민 위원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사실을!

○송석준 위원 사실이야?

○김용민 위원 그게 거짓말이에요?

○송석준 위원 사실이에요?

○김용민 위원 사실이지.

○위원장 정청래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박준태 위원 이것 갈등이 커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하나씩 주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앉으세요.

○송석준 위원 김용민 위원!

우리나라가 검찰 독재고 동료 위원들이 검찰의 변호인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하세요.

○박은정 위원 검찰 독재는 맞지요.

○장경태 위원 그런데 검사 무서워해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하세요.

○송석준 위원 발언권 안 주셨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하세요.

○송석준 위원 항의는 할 수 있잖아, 항의는. 동료 위원이 화가 나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계속 화 안 나다가 왜 갑자기 지금 화가 나오?

○장경태 위원 검찰 무서워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데.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하세요.

○송석준 위원 제가 발언권 못 받았지만……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하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씩 주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하세요.

○유상범 위원 이건 한번 들어 보셔야지요. 아까 항의한 부분이니까 신상발언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하세요.

○장경태 위원 무슨 욕설도 아니고 비속어도 아니고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비하입니까?

○송석준 위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정상화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이미 서영교 위원에게 발언권이 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끝나고 발언권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그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발언하세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최은순 장모의 주가조작도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주가조작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주가조작은 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주가조작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이지요? 주가조작은 범죄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최은순, 김건희 관련해서 공범들이 전부 다 구속당하고 지금 처벌까지 받았어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어요. 한 번 소환했는데 안 나왔어요. 또 한 번 소환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렇게 계속 소환해도 안 나오면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맞습니까?

소환했는데 안 나왔어요. 또 소환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공수처의 송창진 차장대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아니 검찰총장 부인일 때부터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이번에 황제 조사가 있었던 거예요. 황제 조사처럼 있었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통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분히 소통하니 빠져라’ 이런 발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말씀드리지 않으면 위원님과 제 말을 듣는 분들이 뭔가 숨기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 두렵기는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총장과 소통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저 화면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언론에 나온 이야기예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게 되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의 법 위반을 지적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김 여사 문제로 서울중앙지검과 소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문제로, 김 여사의, 부인 변호사도 아니고 이렇게 소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는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걸 질문했고요, 오늘 사실인지 확인을 물었는데 답변 못 했습니다. 우선 전제하고 그렇게 갑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문제로 충분히 소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온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이 함부로 나서면 이것은 국정농단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사유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인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남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자기의 부인이다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돼서 관여한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쓴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제가 지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어요. 수사했어요. 수사했는데 검찰로 불렸습니까? 아닙니다. 불려 갔습니다, 검사가. 가서……

제가 물어볼게요.

신분증 거기서 확인시켰습니까? 그리고 휴대폰 그 경호처에다가 반납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휴대폰을 들고 있고 검사는 휴대폰을 빼앗긴 채 조사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우선 아까 말씀하신 JTBC 보도 내용을 사실임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조사 과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휴대폰이 어떻고 신분증이 어떻고 하는 내용은 장관이 알 수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이 사람이 말하는 녹취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검사가 들고 온 핸드폰은 원격조종을 통해서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억울해요’라고 하는 게 저 사람 이야기예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이 이걸 알 수 없다? 왜요? 저 사람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1시간 내내 떠들었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저 유튜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못 한 게 아니라 저건 보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적했어요.

그리면 물을게요.

검사가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그 변호사라든지, 경호처에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수사를 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안 되지요. 대한민국의 검사가 그런 모욕을 당해서 됩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굴욕을 당해서 됩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휴대폰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경호와 관련된 경우에 휴대폰 제약은.....

○서영교 위원 수사받는데 무슨 경호를 얘기하는 거지요? 수사받는 피의자에게 무슨 경호를 얘기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검찰청을 보면 경호가 무너집니까? 대한민국 검사, 검찰청이 그렇게 허술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곳이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의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무 문제없게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되면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말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검사를 핸드폰 다 압수해 주시지요. 저희도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 오신 분들 다 휴대폰 압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시간 됐습니다.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답변드릴 기회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질문 답변 포함해서 7분인데 7분이 다 끝났습니다.

○서영교 위원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하시게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고 답변을 못 해서……

○위원장 정청래 대신 장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서 발언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짧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간 발언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휴대폰, 이런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경호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당부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저기 말씀하시는 저 변호사님의 유튜브는 저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지 알 수 없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너무나 굴욕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위원들의 질의가 끝났는데 우리 정부위원들께서 발언할 기회를 놓쳐서 7분이 끝났다, 그런데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위원장에게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적절하게 발언권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가급적 드리도록 할 테니 그렇게 기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 아까 ‘JTBC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JTBC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소통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 자체의 정당성 이런 것보다는 다른 면으로 검찰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다른 우려를 가져올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JTBC 그 내용 자체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 요구나 고발 조치는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내에 있지 않아서……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또 이러시네.

○위원장 정청래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거야 다른 질문을 통해서 하면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사실 보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억울하니까 정정보도 요구나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도 했었고 조사도 몇 차례 받으러 갔었습니다. 매우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유사한 경찰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사건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백해룡 경정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장폐천을 말했습니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의 세관직원 마약조직 연루사건 수사 외압 고발 건에 대해서 백해룡 경정이 고발인 신분으로 24일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받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고발인 조사 이후 29일 날 백해룡 경정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에서 일하는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약수사 브리핑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고발인 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경찰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발언 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발인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정 위원** 어제 보도에서 관련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김찬수 서장의 용산 언급이 있고 마약수사 브리핑이 두 번이나 연기가 됐고 뒤늦게 열린 브리핑에서는 세관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공수처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고발인 조사에서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조사가 됐을 것이고 세관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마약수사에 용산이 개입했다는 수사 외압 폭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장님 입장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저희들도 고발장이 들어와 있으니 그 의혹을 해소하고 또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중에 지금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은정 위원** 이 사건은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과 매우 닮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약 수사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9월 20일 지금 대통령실에 가 있는 김찬수 서장의 용산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뀐 상황이거든요. 용산이 언급되고 보름 뒤에 백해룡 수사팀장은 지휘라인에도 없고 일면식도 없었던 조병노 현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성 전화를 받습니다. 백 팀장은 분명하게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조병노 경무관과 당시 관세청장,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고 그 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이 고발장이 진실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중요한 점을 내포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 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경찰에서도 조병노 경무관의 수사 외압 의혹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2024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찰 중에 유일하게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공무원으로 봐도 불문의 의결 비율은 5.9%이고 조병노 경무관은 5.9%의 확률을 뚫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수사팀장에게 용산을 언급한 압박이 들어가고 조병노 경무관의 수사 외압 이후의 상황은 더욱 참담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병노 경무관의 통화 이후에 영등포서에서 훌륭하게 칭찬을 받았던 마약 수사는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이첩이 되었고 마약 수사 최종 브리핑에서 결국 세관 연루 사실은 빠졌습니다. 수사 외압 이후 용산을 처음 언급했던 김 모 영등포경찰서장은 진짜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근무지를 옮겼고 사건을 총괄했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2계급 승진하면서 영전했습니다.

절차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했던 백해룡 경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이 채 해병 순직사건 은폐 관련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일명 ‘멋쟁해병’ 단톡방의 인물과도 강하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멋쟁해병 단톡방에 있던 현직 경찰인 최 모 경위는 조병노 경무관의 부속실장으로 일했던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종호가 직접 조병노 경무관의 승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내부의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니고 9월 20일 김찬수 서장이 용산을 언급하고 나서 수사가 이첩이

되고 마약 수사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세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백해룡 경정의 조병노 경무관 고발 건은 수사 외압, 인사청탁 의혹, 징계무마 의혹이 함께 같이 있는 국정농단의 일면입니다.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의……

○위원장 정청래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예, 이런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1분간 발언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 대상 여부, 그다음에 또 지금 공익제보자가 내세운 카카오톡의 이종호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중에 나온 또 다른 사건이니 연결 지점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지면 시청자들은 발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답변 포함해서 7분 내에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 맞춰 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계속 발언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7분 되면 다음 기회를 노리시고 발언은 일단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이건태 위원 최근 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 김건희 여사 조사는 원칙에 위반됐다’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원석 총장의 이 입장과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중앙지검에서 진행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와 관련돼서는……

○이건태 위원 좀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보고와 관련돼서는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언급하기가 어렵고 수사 절차와 관련돼서는 제반 규정을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중앙지검이 원칙에 맞게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의 책임자인 이원석 총장이 ‘예외고 특혜고 성역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 그러면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총장이 지금 침해하고 흔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될 것 같은데 의향이 어떠신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그중 어느 쪽을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태 위원 7월 7일 날 이원석 총장이 장관님과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니 장관님께서 ‘그것은 보안상, 경호상 어렵다’, 반대했다고 그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건관계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변호인과 수사팀 간에 협의해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서로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 주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지휘권 없는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휘권은……

○이건태 위원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휘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지휘권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 생각을 이야기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 말씀을 하셨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과 특별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총장이 지휘권을 살려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 당연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함으로써 장관님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지휘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휘권은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라는 기관이 검찰총장이라는 기관에게 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장관님, 총장은 지휘권을 복원시켜 달라고 했는데 장관님은 지휘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휘권 발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결국 거부하신 겁니다. 거부라는 지휘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 계속할게요.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윤석열 총장께 했던 지휘권의 내용은 윤석열 총장의 본인이나 가족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총장이 아닌 그다음 총장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지휘권의 효력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지휘권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윤석열이라는 그 특정인, 총장에 대한 것인데 이걸 확대해 가지고 이원석 총장은 마치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서 수사 지휘를 방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의 태도가 갑자기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뒤에 바뀌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지난번에 송경호 지검장을 교체한 것은 민정수석의 방침에 따른 걸로 보여지는 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지난번 언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민정수석이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민정수석 의견을 듣고 했다는 인사는 지극히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건태 위원** 저는 장관님이 청문회 통과하기 전에 내정된 상태부터 인사 작업을 하는 것을 법무부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민정수석이 내정된 상태에서 장관하고 인사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장관과 총장과 민정수석 사이의 역학관계가 민정수석 중심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검찰은 검찰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것이고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쓸려 있다고 그러면 그 기관의 기관장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 아까부터 의사진행발언 좀 기다렸다가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 세 번이나 말씀하셨으니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막 손 들고 의사진행발언 달라 하지 마시고 간사를 통해서 메모를 통해서 간사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사님들이 회의 시작 전에 협의를 하실 때 오늘은 의사진행발언을 양쪽에서

1명으로 하자, 2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간사 권한을 좀 더 제가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질의 순서 바꿀 때도 같은 당에서 간사에게 얘기를 해서 간사가 보통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질의 순서 바꿀 때도 의사진행발언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손 들지 마시고 간사를 통해서 발언권, 의사진행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으니 앞으로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손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유상범 간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송석준 위원 발언 순서가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전에 제가 잠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되면 질의하는 순서가 끊기고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우니까 송석준 위원님 발언 전에 제가 잠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제가 법사위하면서 ‘특검과 탄핵의 끝없는 이어달리기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지난번 회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이런 표현을 써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법안 또 ‘한동훈 특검법’ 해서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1소위로 회부가 됐지요.

지난번 우리 회의가 대통령 탄핵 청원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검사 김영철에 대해서 탄핵조사를 하는 탄핵조사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반면에 타 상임위 법이긴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리는 현금살포법 그다음에 불법파업 조장법, 이렇게 국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의 법들은 우리가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는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런 법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자료 보시면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대법관 신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있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반 의석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 2021년도에는 이 법안이 통과돼서 현재의 판단을 받았지만 각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건의 탄핵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현재 우리 22대 국회에 법관 탄핵 관련한 소추안이 올라온 것은 없습

니다. 그렇지만 일부 법관도 탄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내린 판사에 대해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민형배 의원이 같은 판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된다고 본다.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법원행정처에서는 안 나와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대법관후보자들께 질의를 했더니 모든 후보자들이 표현의 정도는 달랐지만 굉장히 우려를 표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면 검사 탄핵은 지금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의 공통점, 표면적인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뿐려졌다 이런 내용들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탄핵 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 검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민주당 관련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강백신 검사, 대선 당시에 가짜뉴스 관련 수사 중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사유로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김만배, 신학림 이미 구속됐었고 압수수색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이화영 경기도부지사를 술자리에서 회유했다, 무슨 대변 테러를 했다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추태를 부렸다는 게 탄핵 사유로 올라와 있는데 제기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당시에 증언을 조작했다 이런 건데요. 이것 검찰 수사했는데 무혐의 결론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탄핵조사 실시를 의결한 김영철 검사,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의혹, 봄주기 수사하고 또 피고인 장시호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장시호 건은 당사자인 장시호 씨가 그런 적이 없다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코바나컨텐츠 건 역시 협찬업체 강제 수사했는데, 무혐의 종결된 사안입니다.

다음, 탄핵안 발의된 것 보면요 기본 정보조차 다 엉터리로 돼 있습니다. 날짜가 잘못 돼 있거나 오타가 있거나,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들이 아주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안건에서조차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이 잘못 기재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검사들이 실제로, 저는 여기는 이름은 지웠지만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신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단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아서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사들은

권력자 입김에서 벗어나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법학자들 또 전문가들 역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신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이런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치적 압박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인데 김영철 검사가 이재명 수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내용과 관계를 제가 묻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 3명도 탄핵소추안 법안 발의된 거 거기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사실을 호도합니까?

주의하세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탄핵소추안 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각종 별건수사, 불법수사, 피의사실 공표, 부당한 기소, 부당한 수사, 무리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방금과 같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안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반박할 것 있으면 반박하세요.

○**이성윤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날 채 해병 특검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좀 계시라 하는데도 마구잡이로 퇴장을 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마구잡이라는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제가 그날 채 해병……

○**이성윤 위원**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역할 다하고 갔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판받아 본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

○**이성윤 위원** 없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무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재판 한 번 받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과거 후보 시절 말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십시오. 평생을 검사로 살았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의 말입니다. ‘무죄를 받더라도 기소되면 인생 절단난다.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치면 재앙이다’.

최근에 장관 취임사를 보니까 ‘든든한 인권의 보루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올해 이번 달 7월 18일 날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됐어요.

이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런 보고를 안 한답니까?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중요한 사건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그 의견을 낸 게 사실입니까?

○**이성윤 위원** 그런 보도가 됐는데 장관한테 묻는 겁니다, 그걸 보고받은 적 있는지.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나경원 의원 등 27명이 기소된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모릅니다.

○**이성윤 위원** 그 사건 수사 경과가 지금 재판 상황이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장관인데……

○**이성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재판을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증인 소환해서 조사하고 피고인 진술조서 하고……

○**이성윤 위원** 아니, 그 사건이 기소된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몇 번 재판했는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횟수를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사건은 2020년 1월 달에 기소한 후에 지금까지 총 서른일곱 번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재판을 연 셈이에요.

이 사건에도 관심을 가져 본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사건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아마 법정에서 진행되는……

○**이성윤 위원**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아니고 왜 재판이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거나 관심을 표명한 적 있나 그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재판과 수사 지연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사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 사건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과거 한동훈 대표가 토론회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청탁까지 했던 사건이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성윤 위원** 모르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청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건이 4년이 넘었는데도 두 달에 한 번씩 느림보 거북이식으로 재판을 하고.

이재명 대표 사건 보면요, 백현동 사건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이 제공되어야 변호인이 변호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9개월이 넘었는데 변호인들한테 증거 기록 안 주고 있다고 그래요.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구체적인 소송, 법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성윤 위원**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은 장관한테 검찰보고사무규칙 상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그런 구체적인 보고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안 했다는 보고를……

○**이성윤 위원**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도 지금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성남FC 사건은 총 중인만 478명인데 1년간 출석한 중인이 고작 4명이랍니다. 이런 내용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재판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재판을 받아 보시면 누구나 압니다.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심리 해야 된다든가 또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든가, 이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장관님이 정말 인권을 생각하고 인권옹호하는 법무부장관이라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장관님, 정말 재판 한번 받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야당 대표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리 재판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내내 법정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 군사정권 때는 가택 연금을 했습니다, 맘에 안 드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는 기소를 쪼개기식 기소하고 또 병합된 사건도 분리해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나가게 해 가지고 결국 법정에 연금하는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인간입니다. 인권이 있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살펴서 이런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윤석열 용산 정권이 정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씨도 수사하지 않고 주야장천 야당 대표만 이렇게 죽여 가는 것 정말 나중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시기에 앞서 1분간……

신상발언입니까?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3분 주셔야지.

○위원장 정청래 아까 계속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송석준 위원 신상발언을 안 주셔 갖고 그냥 육성으로 다 떠들어서요.

○위원장 정청래 신상발언 1분 하시고 그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분 주세요.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광규택 위원에 대한 위원장님의 발언권 정지 이것은 정말 즉각 취소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광 위원님이 모욕감을 느끼고 또 지역구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용민 위원님 발언 내용을 들이켜 보면요, 동료 위원들을 갖다가 마치 검찰한테 겁을 먹어서 한마디도 못 하고 검사들 변호하고 하는 변호인 같다 이런 말이야말로, 이런 발언이야말로 동료 위원들을 모독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뭔가 제재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광규택 위원 억울하게, 지역 주민들께 얼마나 지금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 공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규택 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고, 김용민 위원님의 동료 위원 모독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정말 사과받아 주시고 다시는 이런 발언이 이 민의의 전당 국회 법사위에서 있을 수 없도록 앞으로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광규택 위원님 빨리 정상적으로 동료 위원으로서 같이 이 자리에 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시고 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강력 제재 좀 취하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어서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시간이에요.

○송석준 위원 예이, 이것은 좀 너무하잖아요. 7분 다시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할까요?

○위원장 정청래 예.

○송석준 위원 정말 유감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시라고요.

○송석준 위원 심히 유감이에요.

법무부장관님, 정말 요새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질서를 어겨서 정말 이 재판을 받고 수사받는 분들이 국회의 주인이 돼 갖고 국회 혼란을 초래해서 그런지 대한민국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정의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특히 기획 범죄들이 너무나 성행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김만배·신학림 기획

공작 사건으로 윤석열 후보가 마치 대장동 일당들과 연루된 것처럼 해서 그야말로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가 발각이 돼서 수사 중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오늘 국방부장관님도 오셨지만 지난 채 해병 사건은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해병대원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군 작전, 대민지원 작전에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이 채 해병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무슨 격노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또 거기다가 무슨 구명로비가 있었느니 수사 외압이 있었느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다 근거 없는 기획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청문회 때 당시 김규현 증인, 박정훈 수사단장 변호인이 카톡방에서 구명로비를 했다라는 어떤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결국은 당사자들한테 고발·고소당하고 또 위증으로서 고발도 당한 상태인데, 이 신성한 국회에서까지도 이런 기획 공작들이 이게 판을 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왔던 최재영 종북좌파 목사님, 이분이 와서 마치 하늘의 심판자같이 대통령 영부인이 제대로 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몰카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몰카 합정 공작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이 신성한 국회 민의의 전당에 와서 마치 이 정권을 심판하는 하늘의 심판자마냥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나 싶어요.

정말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증인을 불러 놓고 동료 위원을 망신 주고 또 동료 위원이 동료 위원을 망신 주는 이런 사태를 방기하면서 시시때때로 마치 재판장처럼 나타나셔 갖고, 여기는 법정 아니잖아요. 헌법기관 동료 위원들끼리 모여서 정말 국가적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하는 자리에서 모독성 발언이 증인에 의해서 겁 없이 이루어지고 또 동료 위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시때때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제재를 해야 될, 의사를 정말 원만하게 진행해야 될 위원장께서 마치 재판장처럼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잘못됐고 하면서 야당 위원들과 또 야당 위원들이 부른 증인들의 발언이 옳은 것처럼 그것을 두둔하는 식의 이런 불공정한 행태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 민의의 전당 한 가운데서, 그것도 공정한 법 질서를 정말 유지시켜 주고 또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될 이 법사위 상임위원장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만 정청래 위원장님, 너무 시간을 안 주시길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 공정하고 엄정한 법사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곽규택 위원님께 정중히 모셔서 사과하시고 원만한 우리 법사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용민 위원**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요?

○**송석준 위원** 지금 웃고 계시는 김용민 동료 위원님 정말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동료 위원 모독성 발언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사과, 광규택 위원보다 열 배 백 배 큰 사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법질서 무너지는, 현정 질서 무너져 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님도 기회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채 해병 사건의 본질이 마치 무슨 대통령 탄핵으로 비화되는 이 현실을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김용민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 신상발언도 송석준 위원님과 같은 형식으로 할 테니 그 때 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발언 기회 주셔야지요.

○김용민 위원 지금 바로 맞받아치지 않으면 이게 일방적인 발언으로 끝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도 이따, 바로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김용민 위원 아닙니다, 한참 뒤니까 지금 주십시오, 1분만 주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반박해야 됩니다. 지금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공정하게 1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국민 여러분, 지금 보셨던 것처럼 물타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광규택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지가 뭔데’라고 하는 아주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사과를 요구하니까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비유적 표현인데 비유적 표현을 듣고서 모독한다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그러면 사실을 적시한 겁니까?

○송석준 위원 모독이지요.

○김용민 위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검사 탄핵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할 때는 화가 안 났다가 광규택 위원이 발언 기회 못 얻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화가 나십니다. 시간차 분노입니까?

○유상범 위원 아까 이미 강하게 항의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해?

○김용민 위원 정말 대단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간차 분노이고 물타기의 전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모독감을 느끼시면 열심히 검사 탄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분위기도 조금 부드럽게 할 겸 부드럽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내심이 매우 부족한 어떤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인내심을 갖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5분을 기다려도 10분을 기다려도 인내심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왜 인내심을 주지 않나’고 화를 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또 하나, 시험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고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대비하시고 하시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의제는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향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잘돼 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제에 대해서 충실히 주시라는 면에서 제가 일화 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장관님들께 질의드렸잖아요. 짧게 답변 기회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장경태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매번 이렇게 하실 겁니까?

○**송석준 위원** 매번이 아니라 제가……

○**위원장 정청래**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송석준 위원** 당연히, 다른 분들한테는……

○**위원장 정청래** 유독 말이 많잖아요, 의사진행 방해하고.

○**송석준 위원** 아까 다른 분들한테는 기회 주셨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 답변이 포함해서 7분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면 장관에게 발언시간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송석준 위원** 그런데 왜 나만 안 줘요?

○**위원장 정청래** 본인 행실을 생각하세요.

○**송석준 위원** 본인 행실이 어때서요?

○**위원장 정청래** 별로 안 좋습니다.

○**송석준 위원** 안 좋아요? 그것은 개인 생각이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김승원 위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장경태 위원** 법무부장관님, 공소 취소 청탁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 재직 중에? 받으신 적은 없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검사를 하면서도 공소 취소 업무를 한 번 해 봤나 안 해 봤나 하는 정도입니다. 공소 취소는 아직……

○**장경태 위원** 그 정도는 기억, 검사 시절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겠습니다. 장관 시절에는 없으신 거지요, 확실히?

○**법무부장관 박성재** 장관 며칠 안 됐습니다.

○**장경태 위원** 일단 그래도 좀 되셨지요.

나경원 의원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법무부장관 시절 공소 취소 청탁을 했던 것을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은 여러 차례 공소 취소에 대해서 ‘나 혼자 살려고 했던 것이냐, 다른 사람까지 같이 살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고요. 심지어 페이스북에는 ‘누군가가 공소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소 취소를 법무부장관으로서 알아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뭐, 구체적인 사건이 없이 말씀하시니까……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소 취소를 하실 가능성 있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관여해서 장관으로서?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공소 취소 권한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제가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특활비 사용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특활비?

○법무부장관 박성재 전임 장관부터 특활비 사용, 법무부장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현재는 특활비 사용 안 하고 계시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장경태 위원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이 운영되었다라는 의혹이 여당 측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댓글팀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리고 법무부에 댓글팀이 따로 있지는 않지요? 뭐 당연한 얘기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전혀……

○장경태 위원 없다고,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의 이 질의와 역사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이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복수의 댓글팀 관계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장예찬 찰떡콤비임’, 지금도 찰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께도 보고드림’. 그러니까 장관이 인지했다는 얘기지요, 일방적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을 누비게 해 줘야,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 줘’라는, 복수의 댓글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댓글팀은 법무부에도 없고, 법무부장관 시절 특활비를 사용할 때 댓글팀 운영했다는 보고를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시지요? 한동훈 장관 시절 법무부 산하에 댓글팀을 운영했거나 한동훈 장관이 특활비를 활용해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은 없으시지요, 당연히?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댓글에 대한 의심되는 계정 24개와 여러 가지 6만여 개에 대한 분석 결과 502개의 오판자나 특수기호, 띠어쓰기까지 100% 똑같은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 댓글, 네거티브 대응, 정적 공격 등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증거도 많고 또 심지어 여당으로부터 최초 제기된 의혹이고요. 또 무엇보다 법무행정의 핵심, 가장 공정한 법무행정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연루된 문제이니만큼 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없다면 없다 있다면 있다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아니, 법무부에 혹시……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후속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댓글팀이 없다고는 확인하신 적은 있나요, 공식적으로 혹시 법무부에? 당연히 없어야 되는 얘기지만 확인은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허위, 사기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부에 이런 댓글팀이 있었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법무부의 명예를……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지금 제가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이 법무부의 명예를 현저하게 위협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응해야 되지 않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댓글이 법무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장경태 위원 ‘법무부장관께도 보고드림’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있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무부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장경태 위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의혹이?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장예찬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본인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저도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에 있었다고 하는 것하고 아닌가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장경태 위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다라는 것도 황당하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왜 한동훈 대표께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고소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월 초에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수사자회권 회복 요청하신 적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장경태 위원 구체적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청한 적은 있나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자회권 요청이라는 부분이 뭐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벼운 내용인지.....

○장경태 위원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와는 특수 관계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잖아요. 모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장경태 위원 둘이 긴밀한 관계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잘 모릅니다.

○장경태 위원 잘 모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7월 초에 수사자회권 회복을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 구체적 대화 내용은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사자회권 복원 요청이라는 게 다른 대화를 하다가 한마디 나왔는 것, 그것을 지회권 복원 요청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배제됐었는데 배제를 다시 복구시켜 달라는 요청, 수사자회권이라고 제가 명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검찰총장으로서 보고받을 대상인데 보고받지 못하는 배제에서 복원했냐 이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 정도 요청은 받았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회권에 대해서는 입장.....

○장경태 위원 당시 법무부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제한 이유는 김건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석 총장은 특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을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1분간 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지휘권 배제는 개인이 개인한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이 기관한테 한 것이고, 기관이 기관에 한 것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배제가 된 것을 다시 복원시켜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임 박범계 장관님께서도 복원 조치는 불필요하다, 복원 조치가 없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

○장경태 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이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은 누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장경태 위원 피혐의자와 부부 관계인데 당연히 회복 못 시켜 주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사람에게서만, 그 사람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관 대 기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답변을 들으세요. 답변을 하라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장경태 위원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었고 답변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장경태 위원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저게 지금? 기관 대 기관이라니요. 왜 배제했는데요? 부부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도 유상범 위원도 발언권 드리지 않았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한 말씀 했기 때문에 그만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중간에 저렇게 끼어들어서 말을 못 하게 하는데.....

○김승원 위원 1분 지났습니다.

○장경태 위원 발언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무리 위원이라도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는 장관보고 '저런 것'이라니요?

○장경태 위원 제가 언제 저런 것이라고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틀어 보시지요.

○장경태 위원 저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런 말이, 저것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장경태 위원 왜 말꼬리 잡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장관, 장관!

○장경태 위원 저런 것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 잠깐만요.

○유상범 위원 예의를 지켜야지, 서로 간에!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만 국무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무위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

○장경태 위원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말하라고 했잖아요.

○장경태 위원 부부 관계라서 지휘권 배제한 것 아닙니까! 왜 국민들 속이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장관!

○장경태 위원 이게 지금 무슨 태도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휘권 배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지휘권 배제의 의미가……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기관 대 기관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경태 위원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핸드폰만 뺏기면서!

○위원장 정청래 장관, 발언 중지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본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답변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중간에 끼어들면 어떻게 해?

○법무부장관 박성재 부끄러운 것은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원장 정청래 장관!

○장경태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원장 정청래 장관! 장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발언권을 주셔야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잠깐 들으세요. 들으세요.

위원장이, 질문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그래서 7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발언하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하는데 또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장경태 위원 고함이라니요? 문제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님께. 저도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도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어요. 1분 발언하셨어요. 그러면 됐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재량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께서 위원하고 싸우러 온 것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질의한 위원에 대해서 지금 같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의 개인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공격도 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관께서도 질의를 받다 보면 국민의힘 위원이 질의하면 좀 편하겠지요. 민주당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도 좀 불편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관께서 국무위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국민들의 여러 저러한 쓴소리 단소리 다 듣는 겁니다. 그것을 못 듣겠다 그러면 장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태도 있잖아요. 태도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다시 그러면 제가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으나 다시……

○박은정 위원 사과하셨어요.

○위원장 정청래 예?

○박은정 위원 사과하셨다고요.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위원장한테 한 겁니다. 위원장한테 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고 개별 위원에게도 제가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이 정도 하자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 정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호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답변할 기회를 줬고 답변을 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본인이 그 와중에 불필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장경태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발언중지시켜 달라고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장경태 위원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속기록 확인하면 진짜 정식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유상범 간사님도 장경태 위원님도 끼어들지 말자고 그

랬지요, 상대방 얘기할 때? 안 끼어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끼어들지 맙시다’ 하면서 끼어들어요. 그것도 하지 말자고 그랬지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할 말 있으면 상대방 발언이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든 뭐 하든 위원장에 발언권 얻고 얘기하라 그 규칙만 지켜지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정부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발언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나는 억울해, 발언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저도 발언 기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따라서 적절하게 발언권을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아침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 주시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제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시고요. 장관들뿐만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도 ‘발언을 중지하세요’ 그러면 중지하세요, 일단.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속으로는 다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상대방 발언에 끼어들면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불법으로 보았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댓글 자체가 불법이라고 본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매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후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모든 댓글이 불법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댓글 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것이 내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거나 그렇다면 문제지만 댓글 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아니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많이 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장예찬 씨를 왜 고소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장예찬 씨는 한동훈 대표 직접 지목해서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이런 지시를 하고 이런 댓글을, 가서 방송에서 이런 방어를 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발언을 계속해 왔지요. 직접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이런 것을 부탁하더라’라고 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댓글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적절히 반박을 해 달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오늘 검사 탄핵소추안에 관한 안건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따로 뭘 비판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 5페이지를 보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이 사업가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개인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수사를 하였고,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인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직접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청법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범죄행위라는 것이지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서 그것을 다시 인지해서 그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별건수사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한 별건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저는 그것을 별건수사로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개시해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찰청법에 보면 ‘부패범죄’라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되어 있는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보면 부패범죄에 대해서 별표 1에 규정된 죄라고 되어 있고요, 별표 1에 보면 제4호에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라고 돼 있고 나목에 가서 보면 ‘정당법 제50조’, 즉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부패범죄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당법 위반, 당대표경선 과정에서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인지에 따라서 이를 수사한 것 저는 검찰청법에도 위반되지 않고 수사상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다른 것을 따지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법 조항을 가지고 법리만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건이 총 17건입니다. 결국은 한 달에 한 번씩 탄핵을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탄핵 발의한 이유는, 그 탄핵 발의된 검사들 어떤 사건들을 담당했는지를 보면 왜 탄핵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 이런 분들에 대한 탄핵. 결국은 계속된 탄핵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정치적 정쟁 아니면 보복 아니면 직무정지를 통해서, 탄핵소추가 발의돼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탄핵의 본질, 탄핵을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향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소추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결과만을 따먹기 위한 다른 목적에 의해서 탄핵이 계속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탄핵이 남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상적인 징계제도나 형사소추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외적으로 있는 헌법상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의 취지 만큼 신중하고 엄중하게 선택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역시도 다른 징계제도 결과와 달리 마지막 순간에 과연이라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에 이르는 내용인지조차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님한테는 질문이 다 가는데, 국방부장관 좀 심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방부장관님한테도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련해서 장관님께 야당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보면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감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조배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수사 환경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하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이 검찰청법에 보면 그냥 지휘·감독이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수사해라, 저것을 저렇게 수사해라, 어떻게 수사했느냐 이것을 보고받을 수 있겠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하는데 시시콜콜히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일반적인 보고만 받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인 보고만 받지요. 저는 그것은 법무부장관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문명사회는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사적구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고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약속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검사 탄핵이, 지난번 국회에서 4명에 대해서 검사 탄핵이 발의가 됐고요. 그런데 검사 탄핵도 모자라서 검사가 또 고소가 됐어요. 민주당 의원 세 분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의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발했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틀리다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재판에서 다투면 되고 그래서 죄가 없으면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왜 수사검사를 고발해서 압력을 행사합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방탄작업이라는 비판이 일반 여론이에요.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공소장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죄명으로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안보 중요합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정보전이 치열합니다. 정보 수집도 중요하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배숙 위원 그 과정에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구멍이 뚫렸어요. 제가 무슨 질문할지 예상이 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배숙 위원 블랙요원 첨보 관련 군사기밀 유출된 거요. 정말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탄핵이냐 특검이냐로 험구한 날 싸우는데 그사이에 국가의 기본인 안보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법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군형법에 보면 간첩죄가 있고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는데, 지금 누설한 사람이 조선족이어서 북한과 연계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지금 군사기밀 누설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형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연원을 따져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인력을 1400명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 정보를 빼내는 자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방침 노하우를 가진 요원들이 문재인 정부 때 다 방출돼 복귀하지 않았다. 1400명 빼져나갔으면 최소한도 절반 정도라도 복구시켜야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200명 정도밖에 복구시키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방첩사가 무력화되면서 사전에 탐지도 못 했고 뒤늦게 알게 됐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됐고 경찰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보시지요.

과거에 정보원, 경찰 그리고 국군의 방첩사가 이렇게 삼각이었는데 지금 한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대공수사 관련된 것들을 보강시킬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주일 새 경찰관 3명이 숨졌습니다.

너무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감당을 못 해서 사망했어요.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수사권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소원을 이뤘는데 사실상 지금 업무부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리고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답변 주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승원** 예, 1분 이내로 간결하게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실제 수사 담당하는 부서에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그렇다고 업무가 감소되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건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갖고 있으며,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검찰이 일이 줄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사건에 지나치게 많이 관여하고 특수 수사에 몰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공판부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닐까, 내부 파견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오전에 업무현황 보고하실 때 32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부정·반칙행위에 대해서 철저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 경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할 수 있나요?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전부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러면 선거전담수사반을 검찰청에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왜 만들어요, 검찰청에?

○ **법무부장관 박성재** 선거사범 수사 중간에 절차 진행되는 과정과 법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민 위원** 직접수사는 안 한다는 것 맞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성재** 송치되기 전에는……

○ **김용민 위원** 나중에 계속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법무부장관 박성재**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사건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와 재판지연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패스트트랙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나경원 의원이 2020년에 기소됐는데, 20대 국회 때 기소됐는데 지금 22대 국회가 됐는데 아직도 1심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신속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쟁여 보시겠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할 게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서 혹시 장관께서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 **법무부장관 박성재** 좀 나누어서 물어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 사전보고를 받은 적 있나요?

○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환에 대해서요?

○ **김용민 위원** 예.

○ **법무부장관 박성재** 없습니다.

○ **김용민 위원** 사후보고는 받았어요?

○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 **김용민 위원** 그러면 지시나 관여한 게 전혀 없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성재** 구체적으로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시한 바 전혀 없습니다.

○ **김용민 위원** 이게 황제 조사だ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장관께서는 제반 규정을 잘 지켰다라고 했는데 출장조사의 근거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위 수사준칙이라고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김용민 위원** 몇 조에 있나요?

○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19조 2항과 5항에 있습니다.

○ **김용민 위원** 거기에 출장조사가 근거 규정이 있어요? 출장 나가서 조사하고 휴대폰도 반납하는 규정이 있나요?

○ **법무부장관 박성재** 휴대폰 반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관서에, 서울중앙지검에 부르는 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신 거예요?

○ 법무부장관 박성재 경호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용민 위원 대통령 가족은 경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경호 등급과 경호 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 김용민 위원 2002년에 장관께서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김홍업 씨를 대검찰청에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속기소까지 갔지요. 이때는 왜 출장조사 안 했습니까? 왜 출장조사를 안 하셨어요?

○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수사의 소환과 조사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라도 출장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경호 때문에 출장조사 가야 된다.

○ 법무부장관 박성재 출장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 김용민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때그때 다른 검찰의 기준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대통령 가족인데도요.

제다가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장관님의 직전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이 ‘김건희 조사, 검찰청에서 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민 위원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영상녹화했나요, 안 했나요?

○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구체적인 수사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 김용민 위원 확인해서 다음번 법사위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 법무부장관 박성재 녹화조사했는지 여부입니까?

○ 김용민 위원 예,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244조의2에 보면 피의자는 고지만으로도 영상녹화 가능하지요? 영상녹화 했는지, 특히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더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녹화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했는지 확인해서 다음 법사위 때 답변하십시오.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여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검 추천을 제삼자가 하도록 하자.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 개인의 입장을 물으시는 겁니까?

○ 김용민 위원 예.

○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 임명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민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래서 제삼자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한번 읽어 볼게요.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게 예전에 최순실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위헌인가요?

답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헌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 답해 보십시오, 빨리.

○법무부장관 박성재 합의와 정부의 수용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민 위원 우리 헌법상 합의 안 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헌입니까? 다수결로 처리한 게 위헌입니까? 헌법 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 한번 들어 보세요.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인사와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 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된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의견에 100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이게 윤석열 검사가 최순실 특검을 마치고 나서 만든 백서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동의하시지 않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주진우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굉장히 남발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들이 다 바라시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률상 신분보장도 하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확실히 보호가 되어야 검사가 소신껏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야당에서 발의했던 탄핵소추 검사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전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또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특히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선거를 돋기 위해서 돈봉투가 오고 갔던 사건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고요. 이게 벼젓이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가 잘못되었으니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격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사나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대놓고 보복성으로 조치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고 굉장히 치졸한 행위이지요.

특히 돈봉투 사건은 실체가 있는 사건이고 민주당에서 관련됐던 의원들 탈당시키고 사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지금 탄핵 사유에 보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하지 말았어야 된다, 별건수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은 법무부가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 존중 차원에서 국회가 하는 조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삼가왔지만 국회가 어느 선을 넘어서서 특히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300만 원짜리 20개가 오고 가서 이것이 인정돼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가 된 사안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했고 지금 얘기했던 것이 별건수사고 공소권 남용이라면 이게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김영철 검사 입장문을 봤는데, 물론 개별 검사가 본인의 억울한 점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탄핵 사유들을 보면 김영철 검사의 어떤 개인비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 전연에 전연으로 모함을 당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 수사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개인비리도 아니고 본인이 했던 객관적인 업무를 가지고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김영철 검사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법무부 차원의 집중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조금 전 답변을 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냐고 물으실 때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님 수사했다고 이런 탄핵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특정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이 이정근 씨와 정당법 관련된 송영길 의원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사가 그런 수사와 관련돼서 탄핵을 당한 부분에 좀 더 명확한 헌법 내지는 법률 위반의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많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서 심히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도 충분히 조직 내에 설명도 열심히 하고 외부로도 설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진우 위원** 이게 검사들의 앞으로 향후 권력자들, 특히 정치권력에 대해 수사할 검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특히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당사자인데 오늘 증인으로 신청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선서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묻는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재판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위증을 종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더 황당합니다. 이게 장시호 씨가 지인한테 본인이 과장해서 거짓말로 했던 사안들이 그 지인이 전문진술로서 얘기해서 그것도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지금 탄핵소추 사유에 벼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12월 6일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불러서 위증을 종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12월 6일 전체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출정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출정기록이 있고 계호가 붙어야 되는데 탄핵소추 사유에 날짜가 박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에 아예 장시호 씨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강력한 알리바이 주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저는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법무부 업무 중에 범죄예방 업무가 주요 업무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보도 난 것 보니까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아마 정신질환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본도와 같은 흥기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지요.

이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높습니다. 일단 흥기류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본도가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물론 경찰청의 업무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의 공간이라는 게 주거지와 완전히 인접하고 또 아파트 입구, 바로 자기 집 앞에서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특히 총포·도검 관련된 허가승인을 받고 정신질환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걸러 낼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묻지마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 행안부장관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은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자가 총포·도검을 소지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처치하는 게 우리 사회에 아직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수용생활 중에 어떻게 하든지 치료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의료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현재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이재승 공수처 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중책 맡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박균택 위원** 국민의 기대가 크니까 임무수행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도록 한 것은 국민들에게 얼굴 비칠 기회도 한번 드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나와 주시라고 한 겁니다.

검사도 하셨고 변호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제 또다시 공수처에서 검사가 되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금품수수 사건들 많이 다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많이 다뤄 보지는 않았지만 경험했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사건입니다. 뇌물이 됐든 배임수재가 됐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돈을 줬다는 일시가 자꾸 바뀌고 장소가 자꾸 바뀌고 줬다는 사람도 바뀌고 액수도 바뀌면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기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건 기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기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기소된 뒤에 변호인으로서 맡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유사한 사건을 맡아 본 일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소를 어떤 경우에 했고 어떤 경우에 안 했는지 일일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잠깐 한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바로 이것인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지요. 검찰이 처음에 김성태를 기소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화영을 기소했던 공소장, 세 번째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기소했던 공소장 내용입니다. 일시가 저렇게 자꾸 바뀌지요. 장소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액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수령자가 저렇게 바뀝니다. 저런 유의 사건 기소해 보거나 기소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한번 본인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저런 유의 사건이 기소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간혹 일시나 장소 같은 게 변경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경위로 저렇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저게 김성태의 진술에 따라 가다 보니까 김성태의 진술대로 저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소장이 작성이 됐을 텐데 이게 정상적인 수사, 정상적인 기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법정 밖에서 그 사유의 당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이게 검찰이 김성태의 진술에 의존해서 기소를 한 결과일 텐데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서 수없이 출석을 시키고 또 쌍방울 직원들을 사적으로 만나게 해 주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기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조작 의혹 같은 것들은 아예 수사에 착수조차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태가 결국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맞추다 보니까 진실에 없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도 장소도 액수도 수령자도 다른 이런 기소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그리면 이것을 한번 봐 줘 보십시오.

이번에 검찰이 기소했고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 70만 불, 필리핀 마닐라에서 70만 불을 호호남에게 줬다는 공소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서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이때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의 아태평화대회에서 이호남을 만나서 김성태가 70만 불을 줬다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국정원 문건에 이호남이 있었다는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부 보고서. 통일부 사무관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작성한 내용인데 거기에도 참석자 이름이 다 나오는데 중요한 이호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발견된 것이 북한 측이 아태평화협에 보냈던 저 공문, 경기도에도 보존이 되고 있는 문서인데 저기에도 이호남이라는 존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호남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 얘기 중에서는 누구 얘기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검찰의 공소장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화영 씨 1심 재판에서 상당 부분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증거 능력 유무에 대한 부분과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룰 일이지 법정 외에서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이 내용은 1심 판결 이후에 발견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이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수사를 하고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감찰을 촉구하든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뭔가 문제를 시정하도록 직접 관심을 갖고 봐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역시 취임 후에도 제삼자가 추천하는 특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채 해병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을 역시 제기를 하던데 장관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역시 위현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조금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특검 추천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가장 헌법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는 찬성을 안 하는 입장이시군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생각이 다릅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지금 명확하게 한동훈 전 장관, 현 국민의힘 대표와는 특검 추천에 관련돼서는 입장을 달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개별적으로 조율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시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특검 부분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신원식 장관님, 국회의원 하실 때하고 장관 하실 때하고 어떻게 달라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각각 소임이 있기 때문에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난 7월 17일 날이 채 상병 순직 1주기고요.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이 버럭 화내던, 딱 1주년이 됐습니다.

공수처장, 오늘부터 관련 통신자료가 매일 삭제될 수 있는데 다 확보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박지원 위원** 했나, 안 했나 그지만 얘기해요. 확보하셨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는 지금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 아니, 나올 때마다 원칙적으로 밝힐 수 없다 하는데 간단히 말씀하세요. 확보했어요, 안 됐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최선을 다하고 수사팀에 지시를 했고……

○**박지원 위원**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공수처장,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말씀하면 되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래서 그 부분 수사팀에 지시를 잘했고 또 수사팀은 열심히 이행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차장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공수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 통신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일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제 지시를 수사팀이 잘 이행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국방장관과 공수처장에게 동시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여름 8월 달에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문서에 항명 대상이 장관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꽉 긋고 사령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세부적인 내용은 검찰단장이나 법무관리관이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검찰단장 나오셨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박지원 위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검찰단장입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방금 질문한 것 알아들었지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질문 이해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에요. 8월 달에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문서에 누구한테 항명했느냐, 이게 본래 문서에는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꽉 긋고 사령관이라고 고쳤는데 그 문건을 알고 계시냐고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제가 보직 해임 문건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검찰단장이 자세히 못 보셨다……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저희 수사는 항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직 해임은 별도의 인사 조치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공수처장, 아까 박은정 위원께서 질문한 영등포경찰서장, 그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매불쇼’에 제가 출연해서 그 문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그 수사과장은 진실로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장이 ‘용산의 뜻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것 파악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고발장이 들어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수사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든 그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갔고 그 수사과장은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됐어요. 그 좌천된 지구대장이 오늘 ‘부당한 보복 인사로 수사 외압을 받은 거다’ 이렇게 경찰 간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지원 위원 국방장관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임성근 소장 명예 전역 신청 받아 줄 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해군본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냥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의하면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명예 전역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해군본부가 주체가 돼서 현재 심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국방장관이 지휘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내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명예퇴직을 하면 엄청난 수당도 많잖아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성근 소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한 것은 ‘군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전체가 거짓말이에요. 자기 사촌 동생, 검사하고 문자 주고받고 한 것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전역은 보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클리어 될 때 명예 전역을 하든 처분을 하든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임성근 사단장의 말의 진실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알 수는 없고 단지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됐지만 공수처 고발이 계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군

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 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명예 전역은 안 된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국정원 댓글 사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민주당의 드루킹 사건 다 처벌받았지요? 특검해서 다 받았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댓글 팀,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 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더라도.....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은 어떻게 해서 발견된지 아세요? 우리가 국정감사에 가서 제가 질문해 가지고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단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배제돼 가지고 여주지청장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이때 제가 질문을 해서 ‘수사 외압으로 댓글 사건 수사를 못 했느냐? 누가 외압했느냐?’ 그러니까 ‘서울 중앙지검장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박근혜 탄핵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댓글팀,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국정 문란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잘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수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경선 과정에 주고받은 내용을 관심 깊게 보지 않아서 그것은.....

○**박지원 위원** 민주당도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드루킹 사건이 나 가지고 특검까지 해서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정원 댓글팀은 나쁘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팀은 나쁘고 드루킹 댓글팀은 나쁘고 한동훈 댓글팀은 좋고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좋다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위원장 정철래** 정리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꼭 수사를 할 것을 촉구 합니다.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수고하셨고요.

국방부장관님 답변 중에 국민들이 듣기에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서 제가 팩트를 조금 보강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유가족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이 보강수사를 하든 뭐 하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그대로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다시 사건을 받아서 다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발언하세요.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제출 다시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1분 안에 하세요.

○**김승원 위원** 법무부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불응하겠다고 해서 이에 우리 법사위 위원들이 법무부가 원하는 대로 7월 19일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자료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추비의 집행 내역 및 지침과 법무부 과별로 배치된 정부구매카드 카드번호 자료, 그 자료들입니다.

법무부는 지금 이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보공개법은 개인이 공공기관에 청구할 때 공무상 비밀로 인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것이지 국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국회증감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증감법 4조 1항에 따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위원장 정청래** 그냥 질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7분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법무부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및 영수증과 부서별 정부구매카드 카드번호, 기획재정담당관이 사용 또는 결제한 업추비 카드 명세서 및 영수증 사본 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장관을 위원회에 출석해서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백해룡 경정,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것입니다. 2023년 9월에 백해룡 형사과장과 그 팀들이 무려 27.8kg의 마약인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말로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해룡 경정, 어디 지구대로 좌천돼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달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27.8kg이 다가 아니라 74kg이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양은 무려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해룡 경정이 왜 지구대에 좌천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마약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당연히 백해룡 경정과 그 수사팀이 그 조직원들이라든가 정보원들을 추적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을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된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왼쪽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해룡 경정,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수사 보고를 받고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내외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라’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2023년 9월 20일 영등포경찰서장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신호탄으로 갑자기 조병노 경무관이 2023년 10월 5일 ‘세관 수사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세관, 관세청을 빼라’라고 하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023년 11월 15일 CBS ‘노컷뉴스’가 탐사보도를 하면서 이 조병노 경무관의 수사 외압을 보도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감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불문, 징계조차 하지 않는 이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오직 백해룡 경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023년 8월 9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 간에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 ‘별 2개가 될 것이다. 곧 달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통화 기록이 있었고 조병노의 징계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통화 내역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PPT 화면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의혹들이 다 이종호 씨를 통해서 대통령실 어느 윗선에 닿고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조원일 회장에 대한 서울구치소 청탁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징계 무마 의혹 그다음에 승진로비 의혹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또한 별 3개, 별 4개 달아 주겠다고 하는 승진로비 의혹 그리고 급기야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국가 공권력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마약 수사 못 한다고 또 우리나라 마약청정국 만들겠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결위에서 마약 수사 예산까지 굉장히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하시고 그랬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김승원 위원 지금 이런 사태를 볼 때 마약 압수를 한 백해룡 경정에 대한 처분이 이게 타당하다고 보이십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김승원 위원 이것도 잘 모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장관으로 계시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당연히 보고를 받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로서 또 검찰로서 마약청정국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작년에 발표를 하셨으니까 또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박성재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승원 위원 다음으로 공수처장님, 지금 백해룡 경정이 올해 7월 16일인가요? 공수처에 고발을 했지요, 직권남용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맞습니다.

○ 김승원 위원 누구누구 고발을 했습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 부분에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제가 그 이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승원 위원 아니, 지금 국회에 나오시면……

 지금 일단 직권남용,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 조병노 경무관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어디까지 고발했는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여하튼……

○ 김승원 위원 뒤에 좀 물어보시지요, 뒤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팀으로부터 고발……

○ 김승원 위원 아니, 처장님 모르시면 뒤에 실무자들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 고발을 했는지 좀 빨리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굉장히 많네요. 조병노 등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승원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

○ 김승원 위원 아니, 무슨 대통령실과 연관된 것이면 이렇게 다들 장관님이나 처장님이나 꿀 먹은 병어리가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관세청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승원 위원 지금 유통된 마약이 시중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제 보충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처장님께서도 이 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공수처 소속 검사들에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또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하시지요.

○ 유상범 위원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와 관련돼서 증인 채택이 된 김영

철 검사, 검찰총장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4시에 발표가 됐는데 ‘특정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서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절차이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라는 이유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입장문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조금 전에 받아서 봤습니다.

○**유상범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유상범 위원** 장관님께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탄핵은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탄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맞습니다. 정말로 일반 행정절차나 형사절차로 구제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위기가 왔을 때 하는 탄핵제도가 이제는 일상화돼서 남발되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특히 오늘 이 탄핵 사유에 첨부된 자료가 언론에서 나온 언론 보도자료 4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탄핵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2월 6일 날, 명확히 명시된 그날 장시호가 출정해서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날짜에 출정기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 또 당사자 검사의 해명에 의하면 이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밝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JTBC에서 지난 6월 25일 날 해병대 단톡방 내용 단독보도가 되면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 문제가 됐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중요한 현안으로 조사 중에 있는 것은 맞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김규현 변호사가 지금 여러 건의 녹취파일을 공개했고, 이 자료는 공수처에 다 제출이 됐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녹취록 우리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수처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이분이 지금 7월 17일 JTBC 인터뷰 그리고 지난 19일 날 청문회에 나와서 ‘민주당 관계자건 누구건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 주장 내용이 그다음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민주당 재선의원과 관계를 맺었다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들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이 김규현 변호사가 단체카톡방 참여자 3인으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경찰에 고소된 내용 그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특히 지난 19일 날 청문회에 나와서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내용을 전달한 것은 전혀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직접 면담도 하고 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 명의로 위증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그 관련되어서 언론에 추가로 공개된 여러 가지 녹취록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김규현 변호사와 관련된 녹취록 내용들? 거짓말도 몇 번 했지만 이종호 선배 등과 잘 통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다음에 재선의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 언론에 공개됐고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언론에 공개된 건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다 파악하고 풀로 업하고 계신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결국은 지금 이 자체를 보면 김규현 변호사가 방송에 제보를 해 가지고 보도를 하게 하고 청문회에 나와서 허위진술하고 방송에 나와서 의혹 사실을 부풀리고, 완전히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 사안입니다.

소위 공작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사기관을 놓락하고 또 전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관련 녹취록은 다, 언론에 공개된 것도 확보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것 맞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상범 위원 관련 녹취록까지 공수처에 다 제공된 것 맞지요? 확보되어 있는 것 맞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녹취록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은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공수처에?

그렇다면 쉽게 진상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원칙과 법대로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경청하였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구명로비 부분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이전에 또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의 공익제보에 따라서 구명로비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유상범 위원 7월 26일 자 이화영 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지사 항소심 재판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와요. '4월 30일 민주당 현역 의원 두 명이 찾아왔는데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속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요?

이건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가 대신 희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질의를 좀 하고 나서 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본질의가 끝나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질문할 시간이니까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끝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 혹시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3불 정책 제가 기억이……

○위원장 정청래 잘 모르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정청래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체제에 복속되지 않는다, 한일 군사동맹은 안 된다, 이게 3불 정책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정청래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정청래 국방부장관은 이 3불 정책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는 첫 번째 사드 추가 배치, 군사상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미국 MD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한일 군사동맹은 반대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고……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낸 논평, 한미일 군사동맹 운운했을 때 국방부에서 반대 입장 표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정정한 거지요.

그 논평 낸 것을 국방부에서 인지를 못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과정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방위 간사 시절에 ‘이종섭 장관과 8월 11일까지는 전화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것은 8월 11일까지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것은커녕 17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장님, 그때 분명하게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된 그 사항 통화를 안 했다고 했고요.

○**위원장 정청래** 그런 전제조건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7번 통화를 했잖아요. 채 상병 전화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장관이 그때 간사 하실 때 얘기는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 이게 방점이에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통화는 17번 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몇 번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채 상병과 관련돼서 통화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이런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툭 터놓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군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는데 그것은 채 상병과 관련된 통화를 안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 전역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니까, 명예 전역 신청한 이유가?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이유는 자세히 듣지 않았는데 해군본부에서 심사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법의 성격상—해군에서 잘 판단하겠지만—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방부장관께서는 명예 전역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12사단에서 신병 열차려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못된 일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적용된 형법이 어떤 법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입니다.

그래서 직권이라 하면 본인의 권한이 있다는 거지요, 그 직에 따른 권한이. 그래서 1항을 적용받아서 군형법 62조(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법대로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는 본인이 지금 주장하길 본인이 현장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근거로 50사단에 작전통제권이 있었고 본인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를 하지 않았다, 현장 지도나 지시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바둑판처럼 찔러 수색하라’ 하는 것은 작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은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그렇다면 군형법 62조(가혹행위) 2항은 직권이 없는 경우는 월권, 다시 말해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 지시를 했고 바둑판처럼 찔러서 수색하라고 했고 그리고 장갑차도 하루 전날 들어간 겁니다. 사단장 지시 없이 장갑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장갑차가 물에 들어갔는데 ‘장갑차, 물에 들어가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단장이 했는지 여단장이 했는지 대대장이 했는지는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장갑차 운행 지시는 누가 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 역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북청의 논리를 백 보 양보 해서 인정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위입니다. 그것은 군형법 62조 2항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역시 법리적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명예 전역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로 국방부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입장이 옳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옳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검찰총장이 괜한 트집을 잡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 따로 중앙지검장 따로 이렇게 해서 무슨 도둑놈을 잡겠습니까? 입장 통일부터 좀 해 주세요. 법무부·검찰, 이런 것은 입장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신상발언 3분만 하세요.

○**장경태 위원** 방금 법무부장관과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법사위 회의 열릴 때마다 100만 뷔 이상,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해당 영상을 돌려 보면서 복기해 보니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앉아 있는 장관보고 저런 것이라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또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장동혁 위원님께서 방금 정회 전에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이나 본회의장을 정말 거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면서 막말을 쏟아 냈던 것들이, 그런 막말 쏟아 냈던 사람들이 민주당 위원들 아니었습니까?’라고 해서 ‘것들이, 저런 것’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장동혁 위원님께서 하셨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요. 또 ‘저런 것들’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신상발언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도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장동혁 위원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세요.

○장동혁 위원 지금 그 영상 다시 보시면 압니다.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돼서 바로 ‘사람들’이라고 다시 분명히 정정해서 발언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의도해서 한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바로 정정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장관님, 제가 이 속기록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장경태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저게 지금?’ 이렇게 했고요.

법무부장관께서 ‘위원장님, 아무리 위원이라도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는 장관보고 저런 것이라니요’ 이렇게 발언했고.

장경태 위원님이 ‘제가 언제 저런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장관님이 ‘틀어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장경태 위원님이 ‘저게’라고 한 것은 저런 발언들을 뜻하지 장관님, 사람 개인을 뜻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 봐도. 그런데 법무부장관님은 ‘아무리 위원이라도 국무위원으로…… 저게라니’, 그걸 본인을 지칭한 걸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발언을 할 때 ‘저게, 저게’, 그런데 그게 사람을 뜻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위원이 발언한 ‘저게’는 이 발언은 박성재 장관이라는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발언’ 일부분을 지칭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가 아까 장관님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개별 위원한테는 사과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만큼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이렇다라는 것 정도를 밝히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저게’라는 게 박성재 장관, 사람을 뜻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들으셨는데, 그렇게 들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장동혁 위원님도 바로 정정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넘었는데요. 볼일도 보셔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시간 없이 오늘 진행하려니까요, 짧게 10분만 딱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 포함해서 3분으로 하고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박지원 위원께서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하셔서 서영교 위원과 질의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박지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공수처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7월 19일이 채 상병순직 1주년입니다. 7월 31일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이 버럭 화낸 1주년입니다. 오늘부터 채 상병 관계, 대통령실 모든 통신자료가 삭제, 소멸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공수처장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지원 위원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물론 거기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십시오. 영등포경찰서장이, 그 큰 마약사건을 과장이 조사하는데 ‘용산 지시다. 발표하지 마라’ 하면서 보고서가 세 번이나 바뀌어요.

아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어제 저도 ‘매불쇼’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 먹더라도 좀 아무지게 해 먹지, 이 바보 같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 경찰서장은 용산으로 승진시키고 그 과장은 지구대장으로 좌천을 하면 요즘 젊은 과장들이 승복하겠어요? 우리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 수사 지금 보고받았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검찰국장!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박지원 위원 그 수사 보고받았어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보고 못 받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오케이. 잘 알아보세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박지원 위원 신원식 국방부장관님께서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 전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하지 않고 해군본부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고발돼서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명예 전역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사실상 아닌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현행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진짜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되겠어요? 우리 법사위도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장관님들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바르게 견의를 하셔서 제발 마약 수사 같은 데 용산에서 개입하지 마라 이거지요,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같은 것. 그리고 그런 바보짓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의 해결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해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댓글, 김건희 댓글, 한동훈 댓글 다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검사 탄핵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언론하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야당 대표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할 때도 온 언론과 친윤 검찰에서 찍어 내기 감찰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것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찍어 내기가 아니고 적법한 감찰이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탄핵소추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고요. 다만 이 검사들은 과거의 수사가 문제가 돼서 지금 탄핵소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언론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위법수사와 관련한 사안들로 탄핵소추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로 프레임을 짜고 공격하는 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생각하고,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이런 문제가 된, 논란이 됐던 검사들이 다 모여 가지고 야당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 지점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한 5개월……

○박은정 위원 5개월 동안,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도 잘 모르시고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총장을 통해서 장관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박은정 위원 도이치모터스 말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박은정 위원 명품백도 조사 대상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명품백 부분도……

○박은정 위원 사전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총장한테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어떤 부분에 대한 사전보고를 말씀……

○박은정 위원 이번에 황제 조사한 거요. 경호처……

○법무부장관 박성재 사전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조사가 사전보고 없이…… 보고규칙 위반이네요,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법무부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보고사무규칙에 위반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한테 조사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고도 안 하고 그냥 진행한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내용이 보고사무규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티몬·위메프 사태도 잘 모르시고 법무부에서 조치하시는 게 없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 댓글팀 운영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국민기자단에 소속된 사람이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잠시……

○박은정 위원 제가 그 댓글팀 관련해 가지고 준비해 온 영상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다 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법무부의 국민기자단 중의 한 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동훈 전 장관을 위해서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것이 한동훈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 장관이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통해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건태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이건태 위원 어떤 증인이 법정에서 교통사고의 증인으로 나가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위증범죄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이 지금…… 거기에 ‘부패와 경제범죄 등’ 해 놓은 부분에……

○이건태 위원 아니, 일단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직답을 좀 해 보십시오.

이게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퍼뜩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이건태 위원 어떤 증인이 폭력 사건의 증인으로 가서 폭행 사건을 목격한 적도 없는데 ‘내가 목격했고 그 사람이 때린 적 없습니다’라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 위증 사건이 부폐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청법에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는 범죄는 경제범죄나 부폐범죄에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시행령으로 이 위증 사건을, 위증죄를 부폐범죄나 경제범죄 범주에 넣을 수가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게 규정상 ‘부폐범죄와 경제범죄 등’ 이렇게 표현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래서 ‘등’은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과 관련돼서 ‘등’에 대한 해석을 지난번 시행령을 다시 바꾸면서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위증범죄, 무고범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등’ 자로 위증범죄, 무고범죄를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증과 무고범죄에 대한 다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등’에 대한 해석으로 무고와 위증범죄를 넣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수사한 것도 이 ‘등’ 자를 근거로 해서 수사개시권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그 상황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사건을 기소한 다음에 재판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위증으로, 그 당시 인지한 것도 아니고 수년이 지나서 위증교사로 인지했는데 이걸 과연 검찰청법이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에 들어가 있는 부폐범죄, 경제범죄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잘못된 불법을 시정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재판 과정에서 그 상황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질의 계속 이어 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 대외적인 명분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이게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의 공통점이 민주당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본인 실명을 걸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고 또 일부는 겁박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장관께 이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물었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잠깐 읽어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왜 그렇게 사실을 호도합니까? 주의하세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이제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탄핵소추안 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위원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수긍이 간다, 좋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원 간사님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합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면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뭐니까?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법무부장관님이 주의를 들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장관님, 검사들이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겹박으로 느끼고 사기가 저하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 수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계시지 않을 때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특정 정치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돼서는 특정 정치인이 이정근 씨 등 관련된 송영길 대표 등과 같은 사람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팩트가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그런데 주의 주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자 입장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의제, 안건이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인데 김영철 검사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또 수사한 전력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팩트는 팩트대로, 주장은 주장대로 그렇게 갈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갑자기……

○위원장 정청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승원 위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혼자 특혜 받지 마세요. 나는 몇 번을 해도 위원장님이 안 주더구먼.

○김승원 위원 아니, 이것은 저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김승원 위원 송석준 위원님은 원 오브 템(one of them)이었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본인이 페이스북에 쓴 것은 맞잖아요?

○김승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런데 쓴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승원 위원 지금 다른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곤해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1분간 하세요.

○박준태 위원 제가 사실 이것 가져왔는데 간사님께 이게 좀 결례인 것 같아서 그렇게 들지도 않았고……

○김승원 위원 취지를 갖다 그렇게 왜곡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아니, 사실을 인정하는데 취지를 왜곡했다고 하니까 1분만 하세요.

○김승원 위원 저희가 지금 탄핵 대상인 검사들을 보니 이 검사들이 예전부터 예컨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특검 그리고 대장동, 더 거슬러서는 대장동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그런 등등의 수사를 과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느냐?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이것은 타깃을 정해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면서 서로를 끌어 주고 서로 요직을 차지하게끔, 이것이야말로 카르텔이고 부패적인 집단이다. 검사가 뭐니까? 객관의 의무가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익의 대표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태가 과연 그런 공익의 대표로서의 검사의 모습이 맞느냐? 그래서 조작과 협박으로 그렇게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히는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정확하게 그 취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박준태 위원이 취지나 이런 것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팩트를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위원장 정청래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물면요……

○김승원 위원 또 속기록 확인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만하시지요.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성윤 위원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김건희 씨 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사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1명하고 또부장들은 진상 조사가 포함될 경우에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고 부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립니다.

장관님, 사표 수리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사표 아직 제출 안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총장의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면서 사표를 내는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부처라면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사표를 반드시 수리하십시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검사 탄핵 관련해서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읽어 주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헌법이 상정한 탄핵소추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무효의 의결이고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겁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 탄핵권을 행사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검사들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왕후장상에 씨가 있는 나라가 되어서 특정인이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꾸는 특권을 누리고 결사옹위의 대상이 되었는지’.

오른쪽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의 비열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대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저들의 사악하고 뻔뻔한 횡포는 반드시 응징되리라 믿습니다’.

도대체 이게 검사들이 해야 할 말입니까? 김건희 씨 소환조사 한 번도 못 한 것, 지금 까지 2년간 소환조사 못 한 것에 대해서 이프로스 게시판에 쓰지도 못 한 검사들이 자신들의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서 탄핵을 했는데 권한을 남용해서 검사들의 직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소가 웃을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타 부처,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징계받아야 마땅합니다.

장관님, 이 댓글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프로스에 들어가서 글을 보지 못 했습니다, 아직.

○이성윤 위원 아니, 국민들이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일은 안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통탄해할 것 같아요.

장관님, 반드시 징계하십시오. 사표 낸 검사 사표 수리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승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사회 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또 보여 드려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출발을 합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꼭 힘 모아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까요? 저는……

법무부장관님, 혹시 ‘돈 받은 자 = 범인, 장물 나눈 자 = 도둑’이라는 손 팻말을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혹시 여기 드신 분 계실 텐데요. 지난 2021년도 경기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되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손 팻말이 나왔어요, ‘돈 받은 자 = 범인, 장물 나눈 자 =

도둑'.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뭐냐? 결국은 지역 토착, 지방 권력과 개발 비리, 이런 부패 세력들이 결탁된 그야말로 지능적 범죄, 기획적 범죄 아닙니까? 거기다가 50억 클럽이라는 그야말로 시대의 대형 보험사기 사건까지 결부된, 아주 치밀한 전문가 그룹들과 지방 권력과 관련 세력들이 결탁된 아주 못된 기획 범죄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도 자꾸 엉뚱한 방식으로 호도가 되고 심지어 대선 당시에는 김만배·신학림 이런 기획 혐의 보도 또 유포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채 해병 이런 불의의 사고, 이 사건을 갖고서 또 우리 사회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거기다가 최재영 좌파 목사님은 몰카 함정 공작으로 오히려 대통령 영부인을 또 마치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사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장관님, 제대로 한번 어떻게, 어떤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기획 범죄를 소탕하고 근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신원식 장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 좀 주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철저히 수사를 해서 거의 대부분 기소가 되어 계속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정한 법 집행 부탁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대리 김승원 정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신 장관님도 잠깐 한 말씀, 30초만……

○국방부장관 신원식 하여튼 저는 나라 튼튼히 잘 지키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훌륭하십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안방 조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말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런 말들이 대통령경호처에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부터 왕후장상에 씨가 있는 나라가 되었느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왕후입니까?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저들의 사악하고 뻔뻔한 횡포는 반드시 응징되리라 믿습니다', 윤핵관과 대통령실에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밤 11시 20분경, 조사 시작 10시간 지나서 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언제, 몇 시경에 보고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장경태 위원 그날 당일은 보고 못 받으셨어요?

김건희 여사를 중앙지검에서 경호처 모 장소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당일 날, 7월 20일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훨씬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훨씬 늦게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송창진 검사가 지난 청문회 때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휴대폰 번호도 포함돼 있었다, 통신영장에’ 했습니다. 기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 저희들이 처음에 기간을 좀……

○장경태 위원 국민들께서 통신영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어렵게, 발급받기 어려운 영장이라고 이해하시는군요. 작년 통신영장청구 5만 5000여 건 중에서 발부 건이 무려 5만 2000여 건입니다. 인용률 약 95%입니다. 이 5% 안에 공수처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봐주기 수사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경태 위원 영장 작성률 대충한 것은 아니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문제없이 다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경태 위원 심지어 통신영장은 95%인데 압수수색영장도 인용률이 90%가 넘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공수처에서 발부한 영장은 고작 3년간 76건, 인용률 69%에 그칩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수사2부장 송창진 검사와 4부의 심 모 검사가 수사 외압한 것 아니냐, 제대로 수사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제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계속적으로…… 작년 8월에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사 회피를 올해 7월에서야 할 수 있습니까? 1년이나 걸립니다. 이종호 씨가 그 과정에서 관련돼 있다는 것을 1년이 걸립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저희 국회가 한 달 만에 알아냈습니다. 국회보다 수사력이 부족합니까? 저희 수사권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사권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제발 좀 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 어떤 외압도 없이 우리 수사팀은 굉장히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있고 그런 염려는 지금 공수처의 현실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모든 댓글이 위법,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대에도 이것으로 너무나 많

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했고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관련해서 무고나 위증의 범죄는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의 중대함은 저는 일반 부패 범죄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리고 이와 등가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저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 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탄핵소추 발의된 검사들, 피소추인이 된 검사들이 누구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탄핵소추의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추된 검사들을 보면 특정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 수사와 관련돼 있는 분들입니다.

우연도 겹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데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당연히 특정인을 수사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도 없고 소추 사유에 들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탄핵소추가 돼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날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적어도 6개월 또 그 이상이 걸리는데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중요한 사건, 방대한 사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검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러면 그 업무 공백이나 수사 공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정도가 어떤지 상황,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탄핵 대상이 되어 있는 검사들의 지위가 각 검찰청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보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정지가 될 경우에 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사 탄핵이 분명 김영철 검사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하고요.

저는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검사라도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저는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하고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김건희 수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 또한 검찰이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수사에 대한, 그렇게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과 면지털이 수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조선일보에 제공하거나 그랬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인권도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저는 검사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행한 것처럼 과도한 수사를

한다면 그 또한 그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법사위에서 저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은 헌법 11조에서 규정한 대로 만인 앞에, 국민 앞에 다 평등해야 됩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조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이 일종의 이런 탄핵소추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이번에는 공수처장님한테 질문해 볼게요.

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서영교 위원** 김건희 여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가서 우리 공수처 검사들에게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수사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수사 본 적 있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공수처의 입장은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런 수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부인들이 참고인이었어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도 검찰에 가서 수사받았어요. 그런데 현 살아 있는 권력의 대통령 부인이면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적 본 적 없지요? 답변해 보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검찰에서 벌어진 일은 검찰에 물으시면 더 좋은데 여하튼 우리 공수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서 수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서 수사해야 돼요.

제가 이것 하나 질문해 볼게요.

‘내가 공수처장이랑 잘 알아. 내가 너 혐의 벗겨 줄게. 공수처에 들어가 있어? 내가 벗겨 줄게’ 이러고 떠들고 다녀요. ‘내가 공수처에 가서 인사 문제도 해결해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면 법적 조치하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가 이야기합니다. ‘VIP는 김건희야. 그리고 임성근 이 XX 사표 내지 말라 그래.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그리고 VIP를 팔아먹고 다녀요.

그리고 조병노 이 사람은 경찰판 수사 외압, 경찰판 해병대 수사 외압의 주범이에요, 조병노. 조병노가 수사 외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징계까지 넣으라고 그랬는데 징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종호가 그런 얘기 해요. ‘조병노 내가 치안감 만들어 줄 거야. 별 두 개 달아 줄 거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인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바로 고소해야지요. 김건희 여사가 바로 고소해야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검사들도 이것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수사 외압인 거예요.

대통령 부부가 너무 많은 곳에 개입되어 있어요.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관련해서 박정

훈 대령 수사 외압에 개입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백해룡 경찰 형사과장, 마약 수사를 그렇게 엄청나게 해서 약 1조에 가까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약사범을 잡았고 그리고 약 74kg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수사 외압해서 좌천 시켜요.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가 있을까요? 조병노가 보호를 받아요. 조병노 이야기한 사람은 이종호예요. 이 이종호는 누구하고 가까워요? 김건희 여사하고 주가……

○위원장 정청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주가조작의 주범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공수처장님, 꼭 당부합니다. 공수처는 고위직범죄수사처예요. 꼭 고위직들의 범죄를 확실하게 수사해서 일별백계해 주는 그런 모습 보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존립 근거와도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 참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참 답답합니다.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공정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기소검사를 고소하고……

민주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시는지 정말 저는 우려가 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조배숙 위원 좀 물겠습니다.

지금 탄핵을 하면, 지금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되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6개월이라고 기간이 아니고……

○조배숙 위원 최소한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고, 현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검사가 탄핵소추 의결이 됐는데 현재에서 한 번 기각된 적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조배숙 위원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뭔가 억울하게 소추당해서, 그런데 현재에서 기각됐는데 그 당사자에 대한 무슨 보상이나 배상, 뭘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해를 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왜냐하면 형사소송도 요새 무죄를 받으면, 구속됐던 피고인이 무죄받으면 형사보상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탄핵은 어떻습니까? 상당 기간 업무에서 정지되고, 낙인효과지요. 그리고 탄핵됐다는 불명예 그리고 또 본인도 현재에 나가서 거기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도 선임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저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무분별한 탄핵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탄핵이 너무 예외적인 거라, 아주 예외적이었잖아요, 교과서에서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제도였고. 그런데 어느 순간 탄핵이 일상화됐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배숙 위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아요, 탄핵도. 그런데 좀 더 뭔가 요건에 맞고 좀 더 엄격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법무부장관님, 검사는 공무원 맞습니까? 검사, 공무원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김용민 위원 검사들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공무원입니다.

○김용민 위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느냐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저 댓글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보니까. 그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거라고 보십니까? 답 못 하시겠지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표시하거나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내용을 다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제대로 답 못 하시겠지요.

진해원 검사에 대해서 기소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진해원 검사가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서 기소해서 징역 1년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으로 징역 6개월,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이 정도 사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으면 아까 검사를 저 댓글들은 징역 3년을 구형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장관이시니까 돌아가서 감찰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살펴보시고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계속 추적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아까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해서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용민 위원 이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든든해지는데 이 군사 대비태세 어디서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군사 대비태세를 어디서 하시냐고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군사 대비태세, 국방부와 우리 군이 합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은 어디서 군사 대비태세 하세요? 집무실에서 하시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집무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하고 제가 있는 장소에서 합니다.

○김용민 위원 좋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니까 대기태세, 체력단련을 골프장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202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그것도 평일입니다. 평일 날 골프장에서 계속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에 나와서 ‘왜 그렇게 골프를 많이 쳤느냐?’ 했더니 대비태세, 대기태세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그때 그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김용민 위원 전후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는데 해병대 사단장이 골프 치고 있는 게 적절하냐고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김용민 위원 아까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징계 강화시키겠다. 이 사안 징계 회부해서 적절한 조치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하란 말씀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임성근 사단장이 골프 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는데 골프 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 조치 취하고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고 도발사태가 있고 이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에서 엄청 질타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분도 한 분도 없고 그것은 본인도 골프를 친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야 입장을 떠나서 장관께서 아직 상황 파악을 못 하셨다면…… 정치인들은요 무슨 뭔 일 있을 때 골프 치고 그러면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비난도 받고 때로는 윤리위 제소도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보직 아닙니까? 해병대에 사단이 두 개밖에 없는데, 포항 일대를 책임지는데 그 엄중한 시기에 골프를 쳤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특히 군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회의 끝나고 돌아가셔서 상황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님 같은 경우도 북한이 막 무슨 미사일 쏘고 하는데 골프 치다가도 상황보고 받으면 바로 귀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 파악,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병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사태 있으면 비상 걸리고 일반사병들도 군화 못 벗고 내무반에 대기하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기강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여야 입장을 떠나서 장관님께서 이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오늘 처음 들은 사실이라…… 제가 그때 청문회를 다 추적을 못했습니다, 업무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때 아마 외국 출장 중이어서 파악을 잘 못했을 겁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때 동구라파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악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됐는데 탄핵하고 특검 일방 통과 이런 것만 난무하고 민생은 뒷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전문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진술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는 건데요. 이게 얘기의 전달 과정에서 당연히 진술이 왜곡되거나과장될 수 있고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허위나 과장을 섞게 되면 그다음부터 영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적으로나 증거 가치를 거의 갖지 못합니다.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서도 단 1명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을 들은 사람이 들은 내용을 유튜버한테 제보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는데 몇 개월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제보 내용도 좀 사실 황당하지요. 변호사 30여 명과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새벽까지 청담동 술자리 가졌다는 건데 지금 보면 너무 황당한 내용인데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이후에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아직 제대로 사과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종호 씨하고 김규현 변호사의 전문진술 문제입니다. 이것도 똑같거든요, 구조가.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은 국회에 와서 이종호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부인이지요, 일면식도 없다는 것은.

그런데 이종호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구명 활동을 한다는 것도 황당하고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김규현 변호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종호 스스로도 거짓이라고 인정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지금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지나면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면서 아마 전혀 접촉이 없다는 게 밝혀지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김영철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호 씨라는 분이 지인에게 허위라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이 또 유튜버한테 제보했습니다. 셋 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장시호 씨는 허위라고 시인도 하고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출정기록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전문증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인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원진술자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진술만으로 사실을 추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미안하지만 법무부장관님의 위법사항과 법무부의 위법사항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당시에 피의자인 분이 검찰총장과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님이 퇴임하는 즉시 그 지휘권은 당연히 복원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비 오니까 우산 쓰고 나가라고 했는데 비가 그치면 당연히 그 우산을 개는 것이 맞지 자식이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야 우산을 갤 수 있고 그걸 허락을 안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은 당연히 지휘권을 행사했어야 맞는 것이고 장관님에게 복원을 요청했던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장관님은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중앙지검 간의 직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의 얘기처럼 장관님이 그것을 용인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무거운 문제라는 것들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관련해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수차에 걸쳐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세 사람의 과도한 소환 사실 그리고 동시소환 사실, 서로 접견을 시켜 준 부당면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정기록, 변호인 접견기록을 제출하라고 여러 번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교정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장관님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균택 위원 그런데 국회증감법 2조와 4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야 한다’,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 딱 2개입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그리고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이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게 군사안보 사안도 아니고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아닌데 이것을 제출 안 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부당수사 이 부분을 감춰 주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국회증감법을 어기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말이 맞다고 한다면 즉시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리고 한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

○박균택 위원 예.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휘권 복원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장관이 총장한테 개인으로 한 게 아니고 기관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당되는 장관이 총장이 바뀌었다면 그 부분을 복원시켜 결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장관이 벌써 두 번, 세 번 바뀌어 왔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총장이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저한테 지휘권 복원해 달라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지휘권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권 복원도 지휘권이다. 그래서 지휘권에 대해서는 저는 극도로 제한돼서 행사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거래 부분은 아까 JTBC 보도에 대해서 그걸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데 제가 그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좀 답답한 것이요.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정정보도도 안 하면서 내지는 못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납득하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 와서 대처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차례네요.

○김승원 위원 우선 꽈규택 위원님이 지금까지 계속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데 유감을 표하면서 빨리 사과하시고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특활비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전체 72억 정도……

○**김승원 위원** 82억, 거의 90억에 가까운 돈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더 많을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팔십몇 억일 겁니다.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저희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박성재** 72억이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특활비는 수사기밀에 써야 되는데 한 부장검사가 특활비를 나누어 준 날 그 돈을 자기 예금계좌에 입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특활비가 자기 계좌에 고스란히 쌓이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활비 이제 투명하게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사후적으로 반드시 보고해서 감사원의 감사 또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 이것은 법을 완전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국회는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방이라든가 국가안위에 아주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는 자료제출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제가 폐북에 올린 글을 가지고 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공소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00페이지입니다. 수사기록이 20만 건입니다, 20만 페이지. 그리고 그 복사비만 3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남FC 건 보니까 검찰 증인이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국가 수사권·형별권 갖고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검사 측 증인 400명을 언제 불러다가 일일이 심문하고 그 재판 언제 끝냅니까? 복사비 3000만 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20만 건에 달하는 기록을 어느 변호사가 읽고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하겠습니까? 검찰은 수십 명이 투입되어서 1년간 2년간 계속 뒤지고 뒤져서 그 수많은 기록을 만들었는데 그걸 일개 개인이 어떻게 방어하라고.

이게 사법 정의입니까? 이게 검찰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무도한 검찰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바꿔야 된다, 끊어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양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전에 우리 배울 때 그 누구지요, 모 검사님께서 꼭 필요한 환부만 도려내는 게 검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 눕혀 놓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죽을 때까지.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지 않고. 그게 지금 검찰의 모습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무부장관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 주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명령으로? 안 하니까 우리가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의 기소권만 가지시라고,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라고.

법무부장관께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국민들을 설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법무부장관님, 패스트트랙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재판이 많이 지연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도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국회법이 아니라 폭처법으로 기소된 것으로 아는데 사안이 더 간단한데도 아직까지 그 사건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제가 별도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건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난 7월 26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2024년 4월 30일 날 다선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 두 분이 장소 변경을 통해 접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종교적 용어인데요. 제삼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결국은 여러, 내가 죄를 대신해 희생을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속을 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전 대표를 끌어들이지 않고 자기가 희생을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무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본인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가 민주당 및 여러 요구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그 이후에 진술 번복에서 더 나아가서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진실규명 논란까지 일으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 희생을 했다 강요하는데 이와 같은 행태야말로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범인도피를 했다고 자인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녹취록 공개되면서 나온 대속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실상 이화영 지사가 자백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합니다마는 검찰이 비난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장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원칙대로 공판에 임하고 충분하게 유죄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검사들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질의를 마쳤고 위원장도 3분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지요?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지요.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죄를 물어야 되지요? 다만 현직 대통령 기간에는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소추를 잠시 미루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임기를 마치면 법률 위반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김건희 여사는 면책 사유가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기록물법상 죄를 물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어떤 부분이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영부인이 민간인이라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민간인 신분인데 왜 검사들이 출장뷔페 나가듯이 조사를 나가지요? 다른 민간인에게도 이런 수사를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민간인이지만 신분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민간인이라면서요, 공직자가 아니라서.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경호 문제가 따로.....

○위원장 정청래 대통령 부인은 신분증 뺏기고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까, 검사들이?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제삼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핸드폰 반납하고 신분증 뺏기고 김건희 여사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원석 총장이 사과를 한 내용에 본인이 원칙을 어겼다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게 뭐냐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에 불러서 조사했어야 했는데 출장뷔페 나갔기 때문에 사과한 겁니다. 왜 사과했는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에서요,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을 인지했다고 그립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청탁금지법에 보면 배우자의 이런 뇌물성 선물에 대해서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할 말 없으면 수사 중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너무하신 것 같다는지요?

○위원장 정청래 뭐라고요?

○장경태 위원 너무하신 것 같다는지요, 위원장님이 너무하신 것……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뭘 너무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정청래 아니,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면서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말씀을,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다른…… 위원장님 마음대로 해석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말하는데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 박성재 장관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위원장 정청래 동의하지 마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왜 나한테 얘기해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장경태 위원 본인 말씀을 전달한 거잖아요, 저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전달 안 하셔도 들립니다.

○서영교 위원 장관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장 정청래 장관……

○장경태 위원 아니,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장관님, 아니 제가 아까 물을 때 ‘대통령도 법 적용의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조항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그랬더니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법정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정형이 그렇게 돼 있지

만 그 법정형을 적용해서 협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수사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제로 ‘김건희 여사가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을 인지한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조항에 적용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아,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저렇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수사 중이라는 말밖에 뭘 더 하겠습니까? ‘대통령 쳐별받아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법무부장관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심모원려 차원에서 그렇게 그냥 얘기한 겁니다. 아셨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건……

○위원장 정청래 그게 위원장의 해석이지요. 당연히 제 해석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래서 저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참 이상한 분이시네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동의하지 마시라고.

누가 동의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하고 끝나고 얘기하세요, 두 분이.

○장경태 위원 아니, 들리니까 말을 하지……

○위원장 정청래 제 의견에 동의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법무부장관이 참 뻣뻣하시네요. 그렇게 대단한 부처 장관입니까? 참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을 그렇게 토 달고 그래서 본인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서영교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오동운 공수처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30초만 자료 간단히 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서영교 위원 모두 다 의문을 가져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7월 31일 날 회의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보거나 그 내용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사진이 대통령실에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그전에 몇 번은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 안보회의했던 내용의 사진, 참가자, 내용 등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서관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 주진우 위원도 그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그전 거에는 사진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7월 31일 날과 그 주변의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30초는 훨씬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청한 거지요?

○서영교 위원 예, 자료를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은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알아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0인)

성명	직업	사유	비고
장시호	최서원의 조카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모해위증의 당사자 김영철 검사에게 허위통화 관련 사과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등 확인	
김영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당사자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영철 검사의 무혐의 처분의 당사자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수사의 총괄 지휘 책임자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특수부 수사 방식, 검찰 내부 부당한 수사 과정에 대한 증언 청취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검찰의 주요 사건과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증언 청취	
이바레니		녹취록 제보자	
김윤미	장시호의 조력자	장시호 압수수색 당시 태블릿PC 등을 보관한	

성명	직업	사유	비고
		인물로 사건의 핵심 관계자	
박주성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관계자	
정다은	전 방송인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관계자	
최재원	클린앤소프트 이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의 관계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핵심 당사자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CFO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핵심 당사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핵심 당사자	
이정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핵심 당사자	
김기현	전 토러스증권 지점장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핵심 당사자	
민태균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핵심 당사자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의 관계자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의 관계자	
조영탁	BEMYCAR 대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의 관계자	

참고인(5인)

성명	직업	사유	비고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김건희 추가조작 취재	
문상현	시사인 기자	김영철, 장시호 관련 취재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죄수와 검사'의 저자	
전혁수	KPI 기자	검찰 전문 취재기자	
이지훈	변호사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의 요구에 따라 이재용 관련 위증을 요구했는지 확인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실장 구상엽
검찰국장 송강
범죄예방정책국장직무대리 송중일
감찰관 류혁
인권국장 승재현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국방부
장관 신원식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인사기획관 오영대
법무관리관 유재은
군수관리관 이갑수
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 박현수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원장 서성훈
국방부검찰단
단장 김동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차장 이재승
기획조정관 이형석
수사기획관 차정현

【보고사항】

○의안 회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5)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이상 4건 7월 22일 회부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22. 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이상 6건 7월 23일 회부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6)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50)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이상 8건 7월 24일 회부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9)

이상 6건 7월 25일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8)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25.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

이상 3건 7월 26일 회부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3)

이상 4건 7월 29일 회부됨

○ 청원 회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2024. 7. 22. 고영주 외 50,5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0)

7월 24일 회부됨